

2019년 계룡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3. 4. ~ 3. 15. (기간 중 10일)
 - ❖ 사전조사 : 2019 2. 18. ~ 2. 22.(5일간)
- 감사참여 : 감사과장 등 19명
- 감사범위 : 2016. 2월 이후 시정 전반
- 감사중점사항
 - 도와 시·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개선
 - 공금 횡·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조사
 -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중점 점검
 -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 점검

II. 감사결과

- 행정상 : 62건(시정 24, 주의 21, 권고 3, 통보 1, 유보 2, 현지처분 11)
- 재정상 : 5,830백만원(추징 5,672, 회수 5, 감액 등 153)
- 신분상 : 51명(경징계 2, 훈계 38, 주의 8, 기관경고 3)
- 수범사례 : 9건 / 제도개선 : 1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53백만원(감액)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2017. 8. 30. (주)○○○지니어링(대표이사 ○○○)외 3개사와 계약(계약금액 599백만원)하고 2017. 8. 31. 착수하여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하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감사일 현재 용역 정지 중에 있다.

[표1]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요

용역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사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룡시 신도안면 ~ 대전시 유성구 세동	L=1.9km, B=20m 계룡시 1.24km 대전시 0.72km	599,700	2017. 8. 31 ~ 2018. 12. 17 (용역정지중)	(주)○○○지니어링외 3개사

나. 위법·부당사항

1) 지질조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등 부적정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인 지질조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위임에 따라 시행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에서는 “기타” 산업군 중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지질조사 용역이(36,600천원) 「판로지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실시설계로서 1천만원 이상의 지질조사)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하였어야 하나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으로 발주 계약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업’ 면허를 가진 여러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② 지반지질 조사계획 수립 및 굴착 확인 소홀

- 토지굴착이 수반되는 지질조사 용역의 경우, 해당 과업지시서에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등과 함께 조사 기록 등을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착수와 함께 관련 계획을 조사·수립토록 한후 발주 부서에 보고토록 하고 실시설계용역 목적 등에 부합되는 구조물 설치 예정지점 및 절토부 굴착 위주의 합리적인 지역을 선점하여 굴착을 시행하여야 하고,
 - 지반조사 결과도 동일 현장재료로써의 신뢰성과 채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 기관의 지위에서 입회 확인(봉인 등)한 후 시험토록 하여함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지반조사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의 결정에 따라 굴착위치를 선점 굴착하였으며 또한 과업구간 중에서 절토부 위주로 굴착하여 암반선을 추정하여야 하나,
 - 굴착위치 4개소 중 2개소를 성토부 지점을 굴착함으로서 미굴착한 절토부 절취시 암반선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질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어떠한 확인(봉인 등)도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하여 굴착위치 선점 지정 및 지질조사 결과 확인 미이행으로 계약상대자의 시험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질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를 가져왔으며, 추후 시공위치와 지질조사 위치의 상이로 인하여 암반선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는 발주청에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설계용역기준 평가기준(PQ, SOQ, TP) 매뉴얼(2013. 3.)』에서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로 구체화 하였으며,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변별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런데도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은 [표3] 평가위원회 구성현황과 같이 평가위원을 건설교통과 ○○○○팀장 ○○○(시설6급) 등 3명을 시설6급으로 구성하여 부적정 하였으며, 또한 평가위원장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기술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 하였다.

[표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비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부합여부	
위원장	○○대학교	교 수 (○○심의위원)	○○○	적격	평가 미참여 대상
위 원	건설교통과	○○○○팀장 (시설 6급)	○○○	부적격	
위 원	도시주택과	○○○○팀장 (시설6급)	○○○	부적격	
위 원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시설6급)	○○○	부적격	

- 이에 전문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위원의 선정 및 심의·평가와 위원장의 평가실시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평가가 적절하게 심의·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3)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미이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현황과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건설기술자 변경 포함)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토록 정하고 있으며,
- 또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 착수전 설계자로부터 착수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에는 위탁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술용역업자 선정시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종합 관리하는 등 용역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위 용역은 계약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용역업체가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용역현황을 등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지 동 시스템에 등재된 용역실적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업무에 활용토록하고 있어, 동 시스템에 적시에 미등재시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적격자 선정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4개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의 용역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용역발주 계약하여야 한다.
- 또한 용역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을 [표4]와 같이 하고 있다

[표4]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용역·물품 기타	견적서 제출방법	비고
2인이상 견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1인 견적제출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하자곤란 등, 천재지변 등은 1인 견적 제출 가능

- 그런데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4개용역 설계결과 [표5]와 같이 산출되었음에도 예산절감 사유로 부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모두 추정 가격 20백만원 이하로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표5]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관련 용역발주 현황

단위: 천원

용역명	실시근거	설계금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녹지)지역 10,000㎡	89,400	20,900 (23%)	20,060	2017.10.30.~2018.12.08	(주)○○○○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면적 5,000㎡	30,600	21,200 (69%)	19,500	2018.02.13.~2018.12.26	(주)○○○지니어링
설계경제성검토	공사비 100억이상	44,000	21,703 (49%)	19,960	2018.09.11.~2018.11.14	(주)◇◇◇엔지
교통안전진단	사업연장 1km이상	69,300	21,600 (31%)	19,870	2018.03.05.~2018.12.10	(주)◆◆기술단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은 설계금액 대비 발주금액 비율임.

- 그 결과 정당하게 산출한 용역비의 23%~69% 감액 발주하여 이로 인한 보완서류 작성지연 등의 용역부실의 우려가 있고 관련 동종 계열 용역업체가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5)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내용을 미반영한 건설기술심의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 설계 경제성 검토(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 경제성 검토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한편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을 (주)◇◇◇엔지(대표이사 ○○○)와 2018. 8. 14. 계약(용역비 20백만원)하여 2018. 11. 14. 완료 설계VE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았다.
- 위 설계 경제성 용역업체는 현장조사, 워크숍, 이행회의 등을 거쳐 VE제안별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도 분석결과 [표6]같이 종단선형을 조정하여 391백만원을 절감하는 방안 등 총 664백만원을 절감하는 방안 8건을 채택하였다.

[표6]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채택현황

제안내용	개선전	개선후	절감액 (백만원)	비 고
계			664	
1. 진입로 시점측 보도 삭제	보도 L=88m	보도 88m 삭제	6	
2. 종단선형 조정(0+000~0+800)	종단선형 3.0%	종단선형 3.509%	391	
3. V형측구 변경	현장타설	폴립관	42	
4. 우수받이	현장타설	기성제품	10	
5. 포장두께 변경	표층5, 중간층6, 기층10, 보조기층21 총 L=42cm	표층5, 기층15, 보조기층22 총 L=42cm	101	
6. 배수구조물 하부 잡석 삭제	잡석 부설	잡석 삭제	4	
7. 램프 구간 비탈면 절취 최소	지반고	지반고 변경	127	
8. 회전교차로 포장변경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증 17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설계VE보고서 자료 인용

- 따라서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 도로의 종단계획고 변경 및 포장 중간층을 삭제하고 기층 변경 등 포장두께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공법 및 기술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설계 경제성(VE) 채택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술심의를 득하였으며, 2019.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승인 설계도서에만 설계 경제성(VE)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 그 결과 포장두께 변경, 종단계획고 변경 등 중요한 공법,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지 못하여 추후 책임 소재 문제발생 및 설계 경제성 검토의 취지 무색 및 용역비(20백만원)의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용역정지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리고 제7절 6. 라.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위 기준 제8절 8.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용역의 정지없이 이행되도록 발주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종합하여 용역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용역 진행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지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의 성실에 입각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설계용역 발주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각종 심의 등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용역기간을 산정함으로써

[표7]과 같이 계약기간내 용역의 완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계약상대자에게 구체적인 용역정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사유로 용역기간을 3~7일을 남기고 용역의 일시정지를 통보하였다.

[표7]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관련 용역 정지 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 정지일	용역 잔여일수	용역 해제일	정지 일수	준공일	정지사유
도로설계 용역	2017. 8.31 ~2018.12.17.	2018. 5.31		2018. 9. 17	109	정지중	국토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건설기술심의 이행 등 행정이행기간 부족
		2018.12.14	3일	미지정	92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2018.06.12. ~2018.12.08	2018.12.03	5일	미지정	103	정지중	행정절차(금강유역환경청협의)이행기간 부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018.02.12. ~2018.12.26	2018.05.31		2018.09.17	109	정지중	국토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행정절차(계룡시, 대전시협의)이행기간 부족
		2018.12.19	7일	미지정	87		
교통안전진단용역	2018.03.05. ~2018.12.10.	2018.05.31		2018.09.17	109	준공	국토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준공)
문화재 조사용역	2018.02.09. ~2018.06.08	2018.05.31		2018.09.17	109	준공	국토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준공)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용역 정지 일수는 2018. 3. 15. 기준)

- 이로 인하여 용역 정지기간 동안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뿐만 아니라 용역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부진공정을 만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용역의 일지정지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 위 도로는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로써 2020년 9월이전까지 완료하여야하는 공사임에도 조기준공 하겠다는 별도의 대책이 없어 용역 정지중으로 준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 또한 해당 과업지시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준공 검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면밀히 확인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토록 하고 계약완료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용역 잔여일수가 3~7일로 예비 준공검사를 못하는 실정으로 설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리고 위 “도로설계용역”은 당초 360일 동안 추진하여야 했으나, 용역기간이 감사일 현재까지 201일 초과하여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인건비 등 추가 설계비용의 손실을 끼쳤으며,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간접비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 초래 및 용역사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용역추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신도안~세동간 도로설계용역” 설계도서 검토 소홀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결과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보도설치 포장공법 선정 부적정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8. 7. 26.)」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보도 포장 형식의 선정은 지역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특히 토지이용 특성 등의 주변 환경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내 설치되는 보도의 경우 일반인들의 통행 등의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아스콘(표층) 포장으로도 보도의 기능은 충분함에도 불필요하게 고가의 칼라아스콘(6,039㎡)를 반영하여 공사비 112백만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② 제경비 제외항목 제경비 반영 부적정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매뉴얼(구 국토해양부) 공통사항에 따르면 시공 상세도 작성비,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서 작성비, 시공측량비 등의 사후정산 단가에 대하여는 제경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공종을 제경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41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있다.

- 위 사업은 2019. 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내용 검토를 받아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추후 그대로 사업시행시 보

도설치(112백만원) 포장 공법 및 제경비 반영(41백만원)이 부적정하게 설계되어 총 153백만원이 과다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 추진하여 여러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질 조사시에는 지반조사계획 검토 및 확인 등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건설기술용역 용역업자 선정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건설사업 관련 건설기술용역의 시행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 및 처리기한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추진시에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여 용역발주 계약 추진하고 용역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 심의시에는 설계 경제성검토(VE)

결과 등 모든 행정이행 협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 후 건설기술 심의 후 공사발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⑥ 건설기술용역 추진시에 행정절차 이행, 협의기간 등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절차 및 준공처리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⑦ 설계에 과다 반영된 보도설치 및 제경비 제외항목이 반영된 제경비 153백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한 후 공사발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등 협의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통 보

【재 정 상】 5,646,220천원(부과)

【지적내용】

가. 일반현황

①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최종)

○ 위치 및 면적 :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 605,397㎡

계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유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60,396.9㎡ (100%)	190,369.7㎡ (31.4%)	16,533.2 (2.7%)	97,391.1 (16.1%)	297,852.4 (49.1%)	4,250.5 (0.7%)

○ 수용인구 및 세대수 : 10,919인 / 4,074세대

○ 사업기간 : 2004.12.30.~2018.12.31.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및 수용방식

○ 사업시행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추진 경위

- 2004.12.30. : 도시개발구역지정 (건교부 고시 제2004-457호) / 1,530,254㎡
- 2006.12.26. : 개발계획 수립고시 (건교부 고시 제2006-561호) / 1,522,216㎡
- 2009.12.21.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011.05.30. : 사업규모 조정 협의 완료(계룡시, 주민 등)
- 2012.04. : 광역교통개선대책철회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실무위원회 제11회 확정)
- 2012.08.27.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등 (국토부고시 제2012-544호) / 605,359㎡
- 2014.11.04. : 대지조성공사 착공
- 2016.08.24.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등 (국토부고시 제2016-568호) / 604,251㎡
- 2018.12.20.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등 (국토부고시 제2018-755호) / 605,396㎡
- 2018.12.21. : 공사완료공고, 사업준공 (국토부공고 제2018-1719호)

②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등 현황

○ 수립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등

○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주요 내용

- 도로시설

도로명	번호	개선대책	연장(Km)	차로수	사업비(억원)	시행시기(완료시기)	시행주체
대로1-2호선 확장 및 신설	1-1	대실지구 ~ 입암산업단지간도로 신설	1.5	4	(305)	2011년	사업시행자
	1-2	입암산업단지 ~ 왕대사거리간도로 신설	0.6	4	119	2011년	계룡시
	1-3	왕대사거리 ~ 왕대준공업지역간도로 확장	0.9	3→4	98	2011년	계룡시
	1-4	왕대준공업지역 ~ 국도4호선간도로 신설	1.6	4	267	2021년	계룡시
	계	-	4.6	-	789		

- 교차로시설

번호	접속지점	개선대책	사업비(억원)	시행시기(완료년도)	시행주체
A	대로1-2호선과 국도4호선 접속지점	입체교차로 (트럼펫형)설치	220	2021년 (국도4호선)	계룡시
B	연화IC	계룡→논산방면 연결로(Ramp) 설치	50	2011년	계룡시

[그림1-광역교통개선대책(안)]





○ 광역교통개선대책 철회 :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제11회/2012.4월)

⇒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 면적 및 규모 미만으로 변경인가 추진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철회 요청 수용

[표1-광역교통개선대책 조정(안)]

구분	기정	변경
사업명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수립('06.10.27)]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실시인가 신청('11.12.29)]
개발면적 및 총사업비	1,530천㎡ / 2,232억원	605천㎡ / 1,460억원
수용인구	18,966인 (6,322세대)	10,472인 (3,850세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여부	수립대상	수립대상 미만
구역도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기준 : 개발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이상

나. 위법·부당사항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규정에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예상인원이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11조 규정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광역교통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제6조 규정에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계룡시 건설교통과에서는 2009.12.21.일 구)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된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의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이 2018.12.21.일 준공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각 주택건설용지 5개블록 중 일반분양 목적의 4개 블록의 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위하여 신청(협의)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광역교통법」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계획별 적정 부담금의 부과 또는 감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 ① 도시주택과로부터 요청된 계룡대실 공동1블럭 공동주택건설 사업 협의의 경우 같은 법 제1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근거로 2018.03.27.일 부담금 감면대상임을 협의 하였고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인 계룡대실 공동2블럭 공동주택 사업계획 협의 또한 같은 규정을 근거로 2018.09.21.일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토 하였으며
- ③ 같은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계룡대실 공동3블럭 및 공동5블럭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협의 역시 동일한 규정으로 2019.02.08.일 부담금 감면대상임을 협의 하였다가, 계룡시 종합감사 개시 이후인 2019.02.21.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사실여부 확인 후 부과대상 판단으로 협의 하였음.

[표2-계룡대실 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현황]

구 분	공동1블럭 (일반분양)	공동2블럭 (일반분양)	공동3블럭 (일반분양)	공동4블럭 (영구임대)	공동5블럭 (일반분양)
승인권자	계룡시	국토교통부	계룡시	국토교통부	계룡시
사업주체	(주) 혜음	LH	국제자산신탁	LH	국제자산신탁
대지면적	39,700㎡	24,706㎡	41,041㎡	25,785㎡	26,823㎡
동수/세대수	12/905세대	10/615세대	10/833세대	8/842세대	8/653세대
사업승인	‘18.07.03	‘18.12.31	‘19.02.28	‘13.12.26	‘19.02.28
사업기간	19.03~21.07	19.04~22.06	19.04~21.08	13.12~20.06	19.04~21.08

-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 종합감사 실시기간 중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위 4개블럭의 주택건설사업 신청과 관련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결정 근거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 질문한 결과, 충청남도 및 도시개발사업자등에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의 감면대상으로 검토함에 있어 별도의 협의 또는 확인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에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사항 확인결과 당초 사업계획상 153만㎡규모 시행으로 「광역교통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100만㎡초과 도시개발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대실지구~국도4호선간 도로개설 계획)으로 추진중, 2012.04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규모 60만㎡로 축소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철회가 확정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계룡시에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청된 4개블럭 주택건설사업 신청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검토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3-계룡대실 지구내 사업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 산정 결과]
(주택건설사업)

<p>▶ 산식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p> <p>총 합계) 11,292,44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룡대실지구 ① 블록 : (1,923,000원×0.015×117,505㎡) - 공제액(0원) = 3,389,402천원 계룡대실지구 ② 블록 : (1,923,000원×0.015×74,549㎡) - 공제액(0원) = 2,150,365천원 계룡대실지구 ③ 블록 : (1,923,000원×0.015×119,453㎡) - 공제액(0원) = 3,445,621천원 계룡대실지구 ④ 블록 :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면제 계룡대실지구 ⑤ 블록 : (1,923,000원×0.015×79,981㎡) - 공제액(0원) = 2,307,052천원 <p>* 표준건축비 : 1,923,000원/㎡ (국토부 고시 2018-882호) * 부 과 율 : 100분의 1.5(충청남도 조례)</p> <p>* 건축연면적 : 계룡시 제출 사업계획승인 현황 * 공 제 액 : 해당사항 없음.</p> <p>※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사항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인정 여부에 따라 50% 적용가능. ⇒ 감면시 5,646,220천원</p>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협의된 「광역교통법」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건에 대하여,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과권자인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부담금(약 5,646,220천원)의 부과·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부담금 부과 등 업무에 추진에 있어 부당한 감면 검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규정(자치법규) 미 제정 및
감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국민권익위원회 규정(자치법규)제정 권고사항(과태료 처분 공정성) 미이행

날 짜	관련 문서 제목	관련기관	참고
'15.11.17.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권고 및 의견조회	국민권익위원회 →계룡시	
'15.11.19. '16.01.11.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권고 및 의견조회	충청남도 →계룡시	
'16.01.19.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계룡시 →충청남도	
'16.06.29.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권고 변경사항 알림	충청남도 →계룡시	

○ <표2> 의견진술 신청 과태료 감면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위반내용			의견진술 신청현황			처분현황		비고
년도	대상자	금액	사유	근거	증빙여부	처리결과	면제금액	
계	20건	640,000					640,000	
2016	1건	32,000	취 재 차 주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 1	면제	32,000	
2017	8건	256,000	▲▲▲키 분실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여 4 부 4	면제	256,000	
2018	11건	352,000	약국에서 약구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 11	면제	352,000	

나. 위법·부당사항

①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규정(자치법규) 제정 권고 미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번호 제2015-000호, 2015.12.7.)」 의하면 각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함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면제 절차 및 과태료 면제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로 제정('16.12월)하도록 권고하였다.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15.11.17.) 및 충청남도('15.11.19. / '16.1.11. / '16.6.29.)로부터 권고 관련 문서를 접수하고도 '19. 3. 14.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하지 않는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업무의 공정성과 교통행정 신뢰를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②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감면처리 부적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160조 제4항(과태료)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9. 3. 14. 감사일 현재까지 계룡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받은 약국방문 주차 등 73건, 2,33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물건하차 등 20건, 640천원 (의견진술 중 27% 감면)**에 대하여 임의로 면제하는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업무의 공정성과 교통행정 신뢰를 손상하여 **성실 과태료 납부 주민만 억울한 상황** 등을 초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을 조속 추진하여 추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감면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민간단체 편법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지원현황

○[표1]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채용규모			예 산 현 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1,218	604	614	4,503,450	126,085	37,825	4,339,540
2016 년도	소 계	388	198	190	1,293,310	52,085	15,625	1,225,600
	공공근로	229	115	114	722,320	-	-	722,320
	중장년층	127	65	62	466,820	-	-	466,820
	지역공동체	32	18	14	104,170	52,085	15,625	36,460
2017 년도	소 계	433	207	226	1,510,140	37,000	11,100	1,462,040
	공공근로	255	121	134	920,320	-	-	920,320
	중장년층	149	70	79	515,820	-	-	515,820
	지역공동체	29	16	13	74,000	37,000	11,100	25,900
2018 년도	소 계	397	199	198	1,700,000	37,000	11,100	1,651,900
	공공근로	240	121	119	1,100,000	-	-	1,100,000
	중장년층	130	65	65	500,000	-	-	500,000
	지역공동체	27	13	14	100,000	37,000	11,100	51,900

○[표2] 민간단체 부당 지원규모

(단위 : 명/천원)

단체명	집행액				비고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8개 단체	91 / 403,158	29 / 129,418	33 / 137,921	29 / 135,819	
대한○○회	24 / 113,125	8 / 35,426	8 / 35,254	8 / 42,445	
○○단체	12 / 63,911	4 / 20,852	4 / 22,094	4 / 20,965	
○○○○협의회	12 / 47,293	4 / 19,037	4 / 15,614	4 / 12,642	
○○○○○보호센터	15 / 57,725	5 / 19,397	6 / 19,262	4 / 19,066	
○○○협회	16 / 67,491	6 / 25,471	6 / 22,921	4 / 19,099	
○○○지회	6 / 27,012	2 / 9,235	2 / 9,101	2 / 8,676	
○○○○○인회	3 / 14,993	-	1 / 4,488	2 / 10,505	
○○○집 지원	2 / 9,187	-	2 / 9,187	-	
○○○관 ○○식당	1 / 2,421	-	-	1 / 2,421	

○[표3] 부정채용 현황

(단위:명, 천원)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연령	선발 합격자 현황				위반내용	비고
		합격시기	성명(성별)	연령	채용사유		
계			2명				
중장년층	45~60	2016 상반기	○○○(여)	38	장애아동 차량 지원	신청자격 미달	
"	"	"	○○○(여)	44	시청사 주차질서 안내	"	

나. 위법·부당사항

① 민간단체 지원 부적정

- 민간단체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57호)」 제4조에 따라 통계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그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 ◆◆회 등 7개 민간단체에 대하여 3년간 88명 391,550천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민간어린이집(1년 / 2명 / 9,187천원) 및 위탁운영중인 ○○○지관(1년 / 1명 / 2,421천원)에 대하여도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원하였다.

② 중장년층 일자리 채용 부적정

○ 또한, 「2016년도 상반기 재정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지원 자격요건이 출생년도 '56. 1. 1. ~ '71. 12. 31.(미달시 '51. 1. 1.까지)임에도 상기 2명에 대하여 담당자가 임의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에 대하여 일자리 발굴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6 마을기업육성사업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영농조합법인) 추진현황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체험판매장 조성			체험판매장
		당초위치	이전위치	이전사유	
◇◇◇ 영농조합법인 (대표 ○○○○)	“빨간 날 체험장터” 향토음식 (건나물, 절임배추등) 먹거리장터 판매장개설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田) (2,569㎡) 준 공 일 : 16.12.22.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畓) (541㎡) 이전일:17.4월경	당초 체험 판매장 토지소유자 이전요구	· 변경신고 미이행 ·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불법건축물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세부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60,570	50,000 (국비25,000 도비 7,500, 시비 17,500)	10,570	57,228	47,029	10,198	3,341	2,970	371	· 판매장 공사비 : 19,132 · 재료비 및 물품구입 : 21,218 · 인건비 : 11,079 · 임대료 : 400 · 운영비용 : 5,398

- 그동안 추진경과

- 2016.02.25.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영농조합 → 계룡시)
↳ 사업명: 빨간 날 체험장터 조성 / 체험판매장 조성위치: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田)
- 2016.05.23.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선정결과통보(충청남도 → 계룡시)
- 2016.06.20. : 마을기업지원약정서 체결 (계룡시 ↔ ◇◇◇영농조합)
- 2016.10.19.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계룡시 → ◇◇◇영농조합)
- 2016.10.31. : 1차 보조금 35,000천원 지급(계룡시 → ◇◇◇영농조합)

- 2016.12.05. : 2차 보조금 15,000천원 지급(계룡시 → ◇◇◇영농조합)
- 2017.04.06. : 정산검사 (계룡시)
 - ↳ 관계법령 준수여부, 당초 보조목적 위배여부, 당초계획과 실제 집행여부 적정검토
- 2017.4월~5월중 : 체험판매장 이전(보조사업자) → 계룡시에 사전승인 미이행
 - ↳ 체험판매장 이전 위치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畓)
 - ↳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불법건축물 조성

나. 위법 · 부당사항

① 마을기업육성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제32조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1조(실적보고), 제22조(정산검사),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 또한, 2016년~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마을기업은 주요 사항(법인형태, 법인 대표, 주 사업장, 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도·점검 및 관리에 따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 시정지시 또는 경고를 할수 있으며,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약정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계룡시와 ◇◇◇영농조합의 16년도 마을기업 지원약정서(16.6.20.체결) 제3조(의무)에 따르면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조(보고 및 제출)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룡시”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구 지역경제과)에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사업인 ◇◇◇ 영농조합법인(대표 ○○○)의 빨간날 체험장터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대표 ○○○))가 사업의 주된 내용인 체험판매장(공사비 : 19,132,267원)을 사전승인 없이 당초 조성위치(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田))에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000(畓)로 이전하였음에도 시정지시 또는 경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② 건축법 위반에 관한 사항 (이전한 체험판매장 : 불법건축물)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

- 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구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대표 ○○○))가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체험판매장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하 “보행안전법” 이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등에 따라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등) 등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동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의 보수·보강·신설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

1)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미제정

-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6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운전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2012. 6. 1일 「교통약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 또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시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전면 개정되었다.
- 따라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조사, 보행우선구역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되어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서비스 제정에 필요한 이동지원센터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 또한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여 “계룡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및 정책사항 등 주요사항 심의를 못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심의를 하지 못하여 부실 도입, 운영이 예상된다.
- 따라서 교통약자 등을 위한 사업 예산확보 어려움 등 계룡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을 이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

- 「교통약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이하 “교통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하고 제7조에 의거 이를 확정하고 고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확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교통증진계획에서 제시한 연차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 그러나 “교통증진계획” 은 2018. 10월 수립하였으나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계룡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하나,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교통증진계획” 에 의거 2019년 추진계획인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 보호구역내 안전장치 설치 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그로 인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보행안전 개선 등 안전한 통행 제공에 소홀히 하였고 2018년 18,300천원의 용역비를 주고 수립한 “교통증진계획” 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업무 소홀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관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보호구역 지정시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통행하는 노인,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제4조 및 5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계룡시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표1]과 같이 19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소를 지정예정에 있다.

[표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 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비고
19개소	17	2	-	지정예정 2개소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관리규칙”에 의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현황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기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강·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 예산에는 보호구역 지정·관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정·관리 업무를 소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미수립 등

-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보행안전법』 제7조에 의거 2014~2018년 “계룡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 시장은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표1] “계룡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13. 1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도 열람 고시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실행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표1] 계룡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발생건수	258	234	217	232	
사망(명)	3	-	1	3	
부상(명)	135	199	87	124	

※ 2019년 계룡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서 자료 활용

- 위와 같이 실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붙임1]와 같이 “계룡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포함된 추진계획 46개지구(2,640백만원) 중 13개지구(737백만원)만 완료되어 28%정도만 추진하고 23개지구는 (72%)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지 못하였다.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하나,
 - 2019년도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로 계룡시의 보행환경 개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보행안전법」의 입법목적이 지연되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 각종사업의 지연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지 못하였으며,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44백만원)를 주고 수립한 계획을 활용·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계룡시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금년 중으로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정·관리 계획, 「보행안전법」에 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철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보건소)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정신재활시설(○○공동체) 현황

시설명 (주소)	설립일 (대표)	종류	입소자		종사자		사 업
			정원	현원	시설장	재활 요원	
○○공동체 (계룡시엄사면 ○○○)	2011.6.20 (○○○)	입소 생활 시설	10	8	1	1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 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가정으로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 정신재활시설(○○공동체) 입소자 퇴소조치 미이행 현황

이 름 (생년)	입소기간	3년초과시점	초과입소 기간	퇴소 조치	비 고
○○○ (56년생)	2014.10.1~2017.12.17	2017.10.1	2개월	미이행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 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 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 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2회 연장하는 경우 입소기간 은 3년임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 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 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퇴소 조치하여야 한다.
○○○ (65년생)	2012.12.31.~2017.5.31	2015.12.31	2년5개월	미이행	
○○○ (82년생)	2013.3.18~2017.5.24	2016.3.18	1년2개월	미이행	
○○○ (76년생)	2014.10.10.~현재	2017.10.10	1년5개월	미이행	
○○○ (62년생)	2011.8.10.~2017.2.9	2014.8.10	2년6개월	미이행	
○○○ (56년생)	2011.8.4.~2017.3.15	2014.8.4	2년7개월	미이행	
○○○ (68년생)	2016.1.1.~현재	2019.1.1	2개월	미이행	

○ 정신재활시설(○○공동체) 운영위원회 현황

이 름	소 속	구 분	운영위원회 구성 (2012.1.15.)	비 고
○○○	○○공동체	시설장	○○공동체 자체구성 (분기별 1회 개최)	시장이 임명, 위촉되도록 규정(2012.1.26.)
○○○	○○○한의원	의료계		
○○○	건축회사	후원자대표		
○○○	○○대학교수	학계		
○○○	○○인테리어	보호자대표(○○○)		
○○○	○○○	○○하는교회		
○○○	○○중앙회	봉사자대표		
○○○	공무원	업무담당자		

나. 위법·부당사항

①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현황 지도·감독 소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에 종사자 수·자격,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5항에 따른 별표 9 및 「2016~2018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소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정신재활시설(○○공동체 시설장 ○○○)에서 7명에 대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7개월 동안 퇴소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소자 입·퇴소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정신재활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2.1.26.).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정신재활시설(○○공동체) 운영위원회 위원을 계룡시장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임명·위촉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 시설(○○공동체)에서 자체 구성한 운영위원회(2012.1.15.)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의 입·퇴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사전집행 및 정산소홀

【기 관 명】 계룡시(사회복지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351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7년 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 '17.05.22. 푸드뱅크 사업 지원계획 알림
 - '17.05.30. 푸드뱅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7.06.01. 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7,240천원 지급
 - '17.06.01. '17년 2~5월분 차량 유류비 351천원 지급
 - ※ 210. 75천원 410. 61천원 5.10. 76천원 5.23. 59천원 5.30. 80천원
 - ※ 시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2017년 5월 교부받은 보조금(7,240천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 보조금이 교부(2017. 6. 1.) 되기 전인 2017년 2월~5월에 사용한 유류대 351천원을 시의 사전승인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하고, 시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제출한 정산서류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확정해야함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사전집행 등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운영이 된 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푸드뱅크 사업비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7,240천원 중 사전 집행한 유류대 351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계룡시 (환경위생과 등 11개 부서)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015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 현황('16~'18년)

공가 사용자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비 고
소 속	성 명	관련기간	공가사유	적정성 여부	
환경위생과 등 11개부서	지방○○주사보 ○○○ 등 14명	'16.2.~'18.12	건강검진	건강검진 미 실시	

- 공가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급 연가보상비 현황('16~'18년)

(단위 : 원)

공가 부적정 사용자		공가 사용 부적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내역		비 고
소 속	성 명	부적정 내용	부정지급 연가보상비 (회수대상액)	
환경위생과 등 11개부서	지방○○주사보 ○○○ 등 14명	건강검진 미 실시	1,015,760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공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공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공가) 및 「계룡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자치행정과)에 따라 소속직원이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가 등을 사용하도록 복무 및 근태관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9.3.13. 감사일 현재까지 환경위생과 ○○○(지방○○주사보) 등 14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함께 공가 부당사용자 12명에게 연가보상비 1,015천원을 지급하는 등 계룡시 소속공무원 복무 및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소속 공무원의 공가 사용 시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만 사용하도록 공문안내 및 복무와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검진 공가를 부당 사용 한 ○○○ (지방○○주사보) 등 12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015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계룡시(세무회계과, 공공시설사업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계 약 내 역			부정당업사 유	제재내용	비고 (위법·부당사항)
	업체명	계약일시	계약금액			
7월 공연 “레미제라블-두남자이야기”	(주)○○○○ 컴퍼니	‘17.6.28	35,000	·공연포기 (‘17.7.5)	부정당업체 미제재	· 부정당업체 미제재 · 계약보증금 미회수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물품구입	□□조달물품	‘17.12.22	1,735	·물품 미납품	과징금부과 (90천원) 2019.3.11	· 행정절차 이행 부적정 ·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자를 과징금 부과로 같음.
2017년 노인보험 보조기 지원			1,283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과징금)에 따르면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시·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시·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2017.6.6. 7월 공연 “레미제라블-두 남자이야기” 를 35,000천원에 (주)■■■■컴퍼니와 계약체결 후 추진하면서
- 계약이후 2017.7.5.일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계약보증금 3,5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의하고 미수납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음.
- 세무회계과에서는 2017.12.22. “2017년 장애인 보조기구 물품구입” 과 “2017년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물품구입 계약을 3,017천원에 ■■조달물품과 계약체결 후 추진하면서,
- 계약이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계약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조달물품(대표 ○○○)에게 청문회에 참석토록 통보(2019.1.5.)하여 과징금부과 신청을 받아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걸쳐 2019.3.11.일 과징금부과 알림공문을 발송하였음.
 -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고자 할 경우는 道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도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계약 미이행 시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과 계약보증금 회수와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道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연부취득 및 감면 농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소홀

【기 관 명】 계룡시(세무회계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3,521천원(부과)

【지적내용】

가. 현 황

○ 취득세 과세표준 축소신고 등 지방세 부과소홀 내역

(‘19.03.15.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납 세 의무자	미 부과 내역 (미신고가산세 포함)			
		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 계	6건	23,521	15,272	7,071	1,142
부동산 연부(年賦) 취득자 미신고	㈜○○프외3	18,303	10,706	6,669	892
농업직불보조금 취득자외 수령	○○○외 1	5,218	4,566	402	250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및 제10조(과세표준) 등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등 취득 및 연부(年賦)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에 100분의 10~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한 농업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50%경감)하고,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직접사용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는 부동산(산업단지 등)을 2년 이상 연부(年賦) 계약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한 (주)○○프 등 4개 법인과 감면농지 취득자가 아닌 제3자의 농업직불보조금 신청·수령으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2년)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 등 2명인이 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23,521천원을 관계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미 부과하여 계룡시 재정확충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취득세를 미 신고·납부한 (주)○○프 등 6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23,521천원을 부과 조치하시고, 향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행사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예산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문화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대 회 명 : 제24회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 대회일정 : 2018. 9. 7.(금)~ 9. 8.(토) / 2일간

- 주 최 : 충청남도△△△체육회

- 주 관 : 계룡시 / 계룡시△△△체육회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120, 시1,080)

- 2018. 2.19. : 보조금 교부결정(시→ 계룡시△△△체육회)

- 2018. 7.23. : 보조금 일부 삭감 반납(45백만원)/체전기념행사 목적

▶사)■ ■ ■ ■ 협회 계룡시지부(전국음악경연대회 등) : 30백만원

▶사)◆ ◆ ◆ ◆ 작가협회 계룡시지부(전국사진촬영대회) : 15백만원

☞ 반납예산(45백만원) : 예산편성 등 없이 여입후 신규보조사업으로 재교부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32조3(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32조4(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조(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및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계룡시(문화체육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도 “제24회 충청남도△△△체육대회 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로 보조금 1,200백만원 (도120, 시1,080)를 “계룡시△△△체육회”에 2018.2.19. 교부결정 하고도, 2018.7.20. 보조금 예산 1,200백만원 중 시비 45백만원을 반납 받은 후 별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없이 △△△체전기념사업 명목으로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선정·지원하였다

-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사)□□□□협회 계룡지부(전국음악경연대회 등 30백만원)에 지원되어 1차 행사로 전국음악경연대회(사업비 20백만원)를 △△△체전이 시작되기 전(2018.9.1.)에 개최하였고, 2차 행사로 음악경연대회 상위수상자와 오케스트라 협연(○○○○○ 필하모니아/공연비 10백만원)은 △△△체전이 종료된 10월에 개최하는 등 △△△체전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국음악경연대회 보조금은 당초 2018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을 △△△체전 경비에서 임의적으로 지원 하였으며,

- 또한, ▲사)◇◇◇◇작가협회 계룡지부(전국사진촬영대회 15백만원)의 경우에는 △△△체전 기간 동안에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체전상황을

사진에 담아 기록으로 남겼으나, 전반적으로 위 2개단체에 지원된 경비는 예산편성 등 절차 이행없이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위 현황(2건 / 45백만원)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에 따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 절차없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으며 예산낭비 우려 등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시고 예산편성 등 절차 이행 없이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준수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금연사업물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보건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건소 금연사업물품 등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별	구입연도	계 약 방 법					
		계		수 의		입 찰	
		횟수	금 액	횟수	금 액	횟수	금 액
2개 사업	총 계	42	148,112	35	104,222	7	43,890
금연보조제 등 금연사업 물품 등 구입	소 계	24	88,264	19	61,184	5	27,080
	2016	11	36,333	8	21,348	3	14,985
	2017	13	51,931	11	39,836	2	12,095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등 구입	소 계	18	59,848	16	43,038	2	16,810
	2017	10	27,278	9	20,825	1	6,453
	2018	8	32,570	7	22,213	1	10,357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할 경우 지정정보처리

- 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 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등에 따르면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에 따르면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① 금연보조제 등 금연사업물품을 구입하면서 2016년(36,332,500원) 및 2017년(51,931,000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입찰 대상이며 연간 구입량을 통합하여 단가입찰 대상임에도 ▲2016년은 11회로 분할하여 3회(14,985,000원)는 입찰의 방법으로 (주)○○○스팸 등 3개 업체와 8회(21,347,500원)는 광고사랑 등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2017년은 13회로 분할하여 2회(12,095,000원)는 입찰의 방법으로 (주)○○○스팸 2개 업체와 11회(39,836,000원)는 □□□□케이 등 6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견적입찰시 낙찰하한율 87.745%를 감안할 경우 총 약 7,498,03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②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검사시약 등을 구입하면서 2017년 (27,277,600원) 및 2018년(32,569,830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입찰 대상이며 연간 구입량을 통합하여 단가입찰 대상임에도 ▲2017년은 10회로 분할하여 1회(6,453,000원)는 입찰의 방법으로 세종약품 1개 업체와 9회(20,825,000원)는 ○○○팸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2018년은 8회로 분할하여 1회는 입찰의 방법으로 □□□□디랩 1개 업체와 7회(22,213,000원)는 (주)□□□이오텍 등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견적입찰시 낙찰하한율 87.745%를 감안할 경우 총 약 5,274,30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2개 사업(①+②)에서 총 약 12,772,33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보건소장은

-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물품 구입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하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운전면허 취소자 운송종사자격 미 취소 등 관리소홀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918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운송종사자격 취소 미 이행 명단

구분	운전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공문통보일	미 이행 사항
계		6명		6회	
택시	○○○	2017.02.28.	음주만취운전	2017.03.02.	종사자격미취소
화물	○○○	2018.02.25.	음주만취운전	2018.03.20.	종사자격미취소
화물	○○○	2018.03.07.	음주만취운전	2018.04.18.	종사자격미취소
화물	○○○	2018.03.10.	음주인피교통사고	2018.04.18.	종사자격미취소
버스	○○○	2018.06.14.	벌점초과	2018.07.02.	종사자격미취소
화물	○○○	2018.06.08.	음주만취운전	2018.07.24.	종사자격미취소

※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통보자료 재구성

○ [표 2] 운전업무 부적격자(운전면허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성명	취소일자	부적격사유	차량번호	지급액(원)	지급기간
○○○	2018.02.25.	운전면허 취소	충남00바0000	917,750	2017.2.27.~2017.03.23

○ [표 3]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 부적격 통보자 미 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통보횟수	부 적 격 내 용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 여부
		계	화물자동차 운전 정밀검사 미 수검자	여객자동차 운전 정밀검사 미 수검자	
계	15	26	2	24	부
2016	4	4	-	4	부
2017	7	15	2	13	부
2018	4	7	-	7	부

나. 위법·부당사항

①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운송종사자격 취소 미 이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수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표 1] 과 같이 충청남도 도로교통과로부터 2017년 1회(1명), 2018년 4회(5명) 등 총 5회에 걸쳐 통보된 운전면허 취소자 6명에 대하여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송종사자격을 근거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우려와 [표 2] 와 같이 운전업무 부적격자인 ○○○에게 917,7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 부적격자 유가보조금 지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6조(지급 일반원칙) 및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 한 것이 확인된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차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 청구한 유가 보조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 그 결과, 운전업무 부적격자인 ○○○에게 918천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③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 부적격 통보자 미 조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및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그리고 제70조(과태료)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및 제88조(과징금 처분) 그리고 제94조(과태료)에 따르면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표 3] 과 같이 충청남도 도로교통과로부터 2016년 4회(4명), 2017년 7회(15명), 2018년 4회(7명) 등 총 15회에 걸쳐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적격자 26명을 통보받은 후, 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송하게 하는지,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종사자는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 그 결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을 할 우려와 화물을 운송하였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운전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운전업무 부적격자에 부당 지급한 유가보조금 917,75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미취득 및 자격증 취소자 등 운전업무 부적격자 통보시, 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송하게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 추진 부 적정

【기 관 명】 계룡시(안전총괄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관제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추진하였다.

[계약현황]

계 약 자	계약일자	용 역 기 간	용역금액	비고
(주)☐☐프트	2018. 2.27.	2018. 3. 1.~ 2018.12.31.	79,070천원	

※ 안전총괄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안전총괄과에서는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관리자 PC, 서버 OS, 스토리지(하자 만료일 2018.12.11.일)에 대하여 유지보수용역 대상으로 포함하여 발주하여 용역비(1,076,944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따라 용역비 1,076,944원이 과다지급 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과다 지급된 용역비 1,076,944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
- 또한, 직원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 등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432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사업 현황

① 파라디아 아파트 ~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위치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 유동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48km, B=10.8m(2차로)

○ 사업비 : 6,587백만원(도급 5,002, 관급 1,585)

○ 사업기간 : 2016.09.29. ~ 2018.09.18.

○ 도 급 자 : (주)■■■■건설 대표 ○○○

※ 1차변경('16.12.15)시 검배2교 교대부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노출된 암에 대하여 암판정 및 구조검토 등 적정성 검토 없이 구조물터파기 반영(증 40백만원)

②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위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0.5km, B=12m(2차로)

○ 사업비 : 1,508백만원(도급 1,046, 관급 462)

○ 사업기간 : 2017.01.10. ~ 2018.04.30.

○ 도 급 자 : ●●●종합건설(주) 대표 ○○○

※ 2차변경('18.2.27)시 절토 토사부에 적정성 검토 없이 식생보호공(녹생토) 반영(증 31백만원) 및 사업준공 시 목적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1,432천원)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규정에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규정에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제124조(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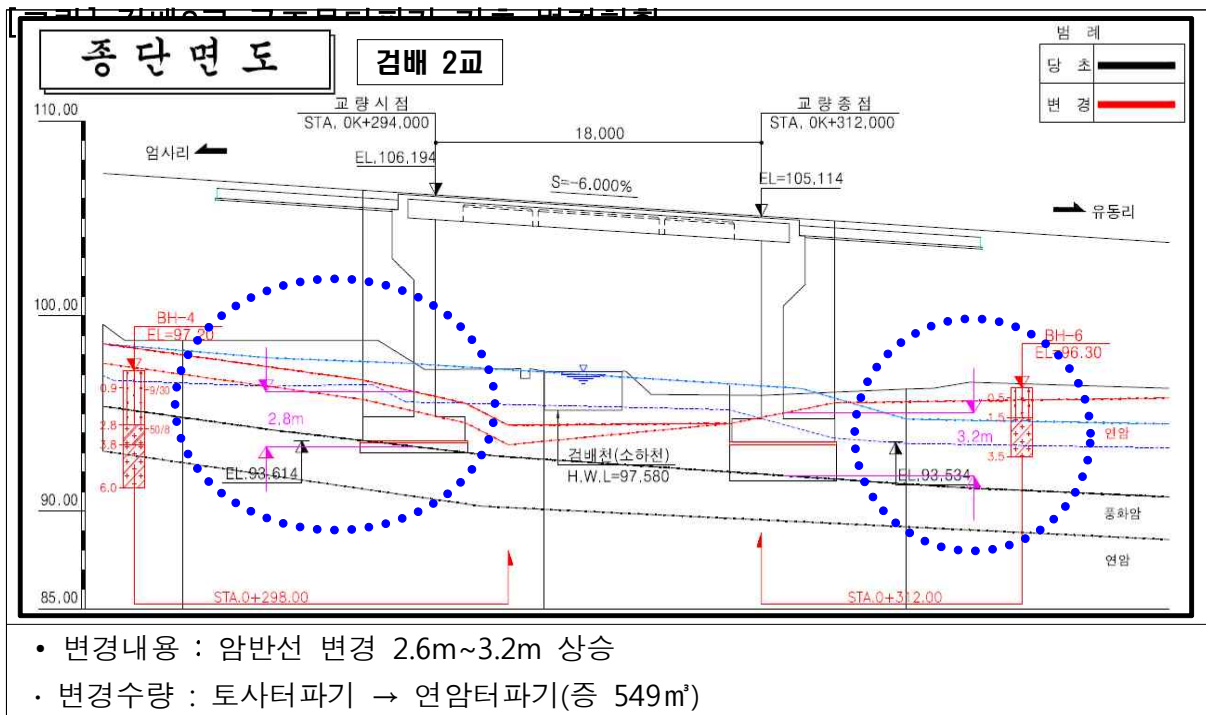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 제13장 공○○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5.(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규정에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파라디아 아파트 ~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 도면, 계산서, 수량산출조서 등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한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파라디아 아파트 ~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 안정성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교량설치를 위한 검배2교 교대부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암반정위원회의 암반정을 실시하여 물량을 확정하고, 교량 기초설치에 적합하였을 경우 교량기초 설치높이 변경(구조검토) 등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토 없이, 암에 대한 구조물터파기 549 m³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설계변경[그림1 참조]하여 결과적으로 증액 사업비(40,060천원)의 반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 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① 토사구간 녹화공법 변경 검토 부적정

- 「비탈면 보호공법 설계기준(2016.6.30.제정 국토교통부)」 4.5.3(비탈면 녹화)에 각기 비탈면의 경사가 1:1.2이상의 토사구간에는 잔디식재, 거적덮기, 종자 뿌어붙이기(Seed Spray), 얇은 식생기반재(1cm)등을 적용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비탈면의 경사가 1:1.2이하의 사면과 암(岩) 사면의 경우 얇은 식생기반재(1~5cm)를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2016.국토교통부)」 제17장(비탈면 녹화)에 따르면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종 생육판정 시기는 춘기(3~5월) 시공의 경우 180일 이후, 하,추기(6~11월) 및 동기(12~2월) 시공의 경우에는 익년 8월 이후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절토사면에 기 반영된 녹화공법(그린복합토 T=0.3cm)을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지반분야 및 비탈면녹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공법선정(변경)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전문가 참여 없이 현장내 시험시공(거적덮기, 그린복합토 T=0.3cm / 2cm)을 통하여 암반사면에 반영된 그린복합토 T=2cm가 적정하다고 판단 후 설계변경 반영하였으나, 시험시공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험시공 시기가 2017.6월 이었다는 담당자의 진술을 볼 때 익년 8월 이후 최종 생육판단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생육판단 시기 이전인 2017.12월 녹화공법 변경 결정을 하는 등 녹화공법 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증액 사업비(30,670천원)의 반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목적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약일반조건 제9절(검사 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 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시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 를 제출하였을 경우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였어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안전간판(속도제한)’ 이 포함되어 제출 되었음에도 감액조정 하지 않아 1,432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1,432천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기 관 명】 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단위 : 2018.12월말 기준 / 건, 백만원)

연도	부 과		납 부		체 납		체납 세대수	결손 예상액	재 산 미 조 회 및 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산 조회	재산 보유자	압류 조치
계	210,354	73,618.7	202,902	73,416.2	7,452	202.5	7,452	110.6	6	1	1
2003	6,994	2,301.1	6,784	2,300.1	210	1.0	210	1.0			
2004	7,566	3,222.2	7,138	3,212.6	428	9.6	428	9.6			
2005	8,198	3,302.8	7,641	3,295.5	557	7.3	557	7.3			
2006	8,943	3,393.7	8,308	3,377.9	635	15.8	635	15.8			
2007	9,746	3,858.1	9,156	3,845.1	590	13.0	590	13.0			
2008	10,445	3,939.7	9,908	3,936.5	537	3.2	537	3.2			
2009	11,286	3,922.9	10,882	3,920.6	404	2.3	404	2.3			
2010	12,358	4,087.9	11,963	4,080.9	395	7.0	395	7.0			
2011	13,116	4,094.8	12,649	4,085.9	467	8.9	467	8.9			
2012	14,746	4,305.5	14,359	4,291.0	387	14.5	387	14.5			
2013	15,762	6,643.7	15,484	6,615.7	278	28.0	278	28.0			
2014	16,378	6,275.0	16,114	6,265.6	264	9.4	264				
2015	17,389	4,802.5	17,216	4,800.7	173	1.8	173		4	미회신	-
2016	18,289	5,469.8	18,074	5,465.7	215	4.1	215		1	미회신	-
2017	19,144	7,082.3	18,668	7,069.6	476	12.7	476		1	1	1
2018	19,994	6,916.7	18,558	6,852.8	1,436	63.9	1,436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고액(50만원 이상)]

나. 위법·부당사항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73조(강제징수)에 따르면 사용료·점용

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7.11.17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를 한 〇〇〇(1,046천원)건 외에 체납처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있어,
- 결과적으로 2018.12월말 기준 체납액 203백만원 중 111백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소멸 시효 완성에 따른 예산손실과 채권 소멸시효가 미 완성된 92백만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예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미납된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농림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7년 마을공동창고 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비 고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16,500	3,750	3,750	9,000	-

- 그동안 추진경과

- 보조사업명 : 2017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2017. 2. 15. : 2017년 마을공동창고 등 보조금 교부결정(道 → 市)
- 2017. 10. 12. : 보조사업 내시(市 → ◇◇◇영농조합법인)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17. 10. 30) 19.8㎡ [존치기간 '20.10.30] / 지목 : 답
- 2017. 11. 22. :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영농조합법인 → 面 → 市)
- 2017. 11. 23.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7. 12. 27. :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市)
- 2017. 12. 20. :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토 보고(市 담당자)

나. 위법·부당사항

①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사업은 「2017년도 마을공동창고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777(2017. 1. 11.)]」에 따라 사업완료시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집행 후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시설물이 사업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상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계룡시 농림과에서는 “2017년 마을공동창고 등(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7.10.12. ◇◇◇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결정하여 '17.12.20.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였는데,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 관련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로써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 관리기간이 10년임에도 토지사용승락('17.8.15~'24.8.15. / 7년간)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존치기간 3년)로 축조 신고함으로써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보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현 상황에서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 공시의무 위반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2017년 마을공동창고 등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중요재산(저온저장고)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추진 및 정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어르신 목욕봉사 및 경로위안행사 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7년 어르신 목욕봉사 및 경로위안행사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비 고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어르신 목욕봉사 및 경로위안행사	◁◁◁◁봉사회 계룡시지구협의회 (이하 봉사회)	3,400	-	3,000	400	-

- 그동안 추진경과

- 2017. 3. 29. : 보조사업 내시(市 → 봉사회)
- 2017. 4. 10. : 보조금 교부신청(봉사회 → 市)
- 2017. 4. 1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市 → 봉사회)
- 2018. 2. 23. : 정산보고서 제출(봉사회 → 市)
- 2018. 3. 12. : 보조금 정산검사 (市 담당자)

나. 위법 · 부당사항

①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여야 하나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②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담분을 입금하고 지출하여야 하나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 지출하였으며,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누락 등 보조금을 적법하게 정산처리하지 않고 있다.

① 보조금 정산 등 관리 부적정

- 봉사회의 정산보고서 내용이 정산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산하였으며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관리를 소홀이 하였다.
- 또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하고 있으나 징구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소홀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향후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양봉농가 꿀포장재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 【기 관 명】 계룡시(농정과)
- 【행 정 상】 시 정
- 【재 정 상】 214천원(회수)
- 【지적내용】

가. 현 황

○ 양봉농가 꿀포장재 지원사업 부당 정산내역

(단위 : 원)

보조사업자		사업량 (세트)	사업비 지원내역					보조금 환수규모		
			총계 (100%)	보조(50%)			자담 (50%)	보조금 환수규모		
주 소	성 명	소계(50%)		도비(16%)	시비(34%)	소계		도비	시비	
	25	9,400	18,800,000	9,400,000	3,008,000	6,392,000	9,400,000	213,630	68,350	145,280
두마면 입암리	○○○	96	192,000	96,000	30,720	65,280	96,000	2,180	700	1,480
두마면 입암길	○○○	108	216,000	108,000	34,560	73,440	108,000	2,450	780	1,670
두마면 깔거리1길	○○○	65	130,000	65,000	20,800	44,200	65,000	1,480	470	1,010
두마면 원터길	○○○	325	650,000	325,000	104,000	221,000	325,000	7,390	2,360	5,030
두마면 ○○○로	○○○	541	1,082,000	541,000	173,120	367,880	541,000	12,300	3,940	8,360
두마면 입암길	○○○	400	800,000	400,000	128,000	272,000	400,000	9,090	2,910	6,180
염사중앙로	○○○	145	290,000	145,000	46,400	98,600	145,000	3,300	1,060	2,240
번영3길	○○○	61	122,000	61,000	19,520	41,480	61,000	1,390	440	950
신도안면 신도안길	○○○	510	1,020,000	510,000	163,200	346,800	510,000	11,590	3,710	7,880
번영4길	○○○	357	714,000	357,000	114,240	242,760	357,000	8,110	2,590	5,520
도곡로	○○○	61	122,000	61,000	19,520	41,480	61,000	1,390	440	950
염사중앙로	○○○	1,233	2,466,000	1,233,000	394,560	838,440	1,233,000	28,020	8,970	19,050
광석항한길	○○○	216	432,000	216,000	69,120	146,880	216,000	4,900	1,570	3,330
번영3길	○○○	865	1,730,000	865,000	276,800	588,200	865,000	19,660	6,290	13,370
염사중앙로	○○○	757	1,514,000	757,000	242,240	514,760	757,000	17,200	5,500	11,700
계백로	○○○	121	242,000	121,000	38,720	82,280	121,000	2,750	880	1,870
번영11길	○○○	67	134,000	67,000	21,440	45,560	67,000	1,520	490	1,030
염사중앙로	○○○	692	1,384,000	692,000	221,440	470,560	692,000	15,730	5,030	10,700
번영2길	○○○	324	648,000	324,000	103,680	220,320	324,000	7,360	2,350	5,010
전원3길	○○○	284	568,000	284,000	90,880	193,120	284,000	6,450	2,060	4,390
장안1길	○○○	96	192,000	96,000	30,720	65,280	96,000	2,180	700	1,480
서금암로	○○○	65	130,000	65,000	20,800	44,200	65,000	1,480	470	1,010
서금암로	○○○	541	1,082,000	541,000	173,120	367,880	541,000	12,300	3,940	8,360
서금암5길	○○○	1,062	2,124,000	1,062,000	339,840	722,160	1,062,000	24,140	7,730	16,410
장안1길	○○○	408	816,000	408,000	130,560	277,440	408,000	9,270	2,970	6,300

○ 그동안 추진경과

- 2017. 10. 17. : 보조사업 내시(市 → 농가)
- 2017. 10. 27. : 보조금 교부결정(市 → 농가)
- 2017. 11월중 : 정산보고서 제출(농가 → 면동 → 市)
- 2017. 12. 6. :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市 담당자)

나. 위법·부당사항

①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담분을 입금하고 지출하여야 하나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 지출하였으며,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하여나 하나 관련서류 미징구한 사실이 있다.

② 보조금 정산 등 관리 부적정

- 보조금의 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의하면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53조의5에 의하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5개 농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오류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보조금 213,63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관리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의회 본회의장 등 인테리어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세무회계과, 의회사무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05천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에서는 (주)◇◇◇산업(대표이사 ○○○)와 계룡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2017. 8.16일 계약체결하여 2018.10.24일 준공되었으며,
- 또한, 의회시설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17.10.10.일◇◇◇◇건축사 사무소(대표 ○○○)와 계약하여 2017.11.6.일 준공하고 의회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주)ㄷㄷㄷ건설(대표 ○○○)와 2018.2.22.일에 계약하여 2018.5.17.일에 준공한바 있다.
- 계룡 별관 증축공사 건축관련 계약현황

구 분	계약(개찰) 업체		개 요	계약금액 (천원)	공사(용역) 기간	비고
	업 체 명	소 재 지				
설계용역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천안시 서북구	지상3층 1,800㎡	121,769	2016.03.10.~ 2016.10.22	
건축공사	(주)◇◇◇산업	홍성군 산업로	증축공사 1동 2,207㎡	2,134,000	2016.12.12.~ 2017.12.18.	
설계용역	◇◇◇◇건축사	계룡시 장안로	별관 의회시 설 실시설계	18,920	2017.10.10.~ 2017.11.6.	
인테리어 공 사	(주)ㄷㄷㄷ건설	논산시 부창로	별관 의회시 설 인테리어	167,000	2018.2.28.~ 2018.5.11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입찰 및 집행기준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2. 정산절차 나. 정산범위 규정에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① 분할발주 부적정

- 계룡시에서는 당초 “계룡시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의회 측에서 마감재를 저가자재 사용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시설(분회의장 등)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2017.9.19.일 ◆◆◆◆건축사사무소(대표 ○○○)와 계약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 예산확보 후 “계룡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공사로 분할발주 하여 가설공사비(2,587천원)가 이중으로 계상됨으로써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였다,

② 4대보험 정산시 원가검토 미흡

- 계룡시에서는 각종 보험료를 정산을 위한 원가를 재검토함에 있어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산정 시 산정오류로 205천원을 과다 반영하는 등 원가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룡시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규정 등을 준수하여 통합발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에 따른 가설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4대 보험정산 시 일반관리비 등 이중 계상된 205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체육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기 관 명】 계룡시(문화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출목	비 고 (위법부당사항)
2016	충남△△△체전 참가	34,0000	민간행사사업보조금	· 사업계획서 변경 미승인 · 신용카드 사용원칙 미준수
2018	제24회 △△△체육대회 훈련용품 구입	70,000	민간자본보조금	· 신용카드 사용원칙 미준수 · 부가가치세 미신고

○ 2016년 충남△△△체전 참가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원)

비 목	교부신청액	정 산 액	차 액	비 고
계	34,000,000	34,000,000	-	
강화훈련비	4,200,000	5,517,961	-1,317,961	
단복구입	12,000,000	11,878,000	122,000	
기타용품비	5,000,000	4,941,850	58,150	
상해보험가입	800,000	635,770	164,230	
선수단 급량비	4,200,000	2,920,000	1,280,000	
선수단 간식비	2,400,000	893,000	1,507,000	
숙박비	2,400,000	1,760,000	640,000	
차량 렌트비	1,100,000	200,000	900,000	
차량 유류비	500,000	659,000	-159,000	
홍 보 비	1,400,000	1,297,000	103,000	
해단식 개최	-	2,000,789	-2,000,789	
선수단 격려금	-	1,000,000	-1,000,000	
의무등급 진료비	-	296,630	-296,630	

※계룡시 자료제공 재구성

○ 계룡시 △△△체육회 참가 보조금 정산내역

< 2016년 충남△△△체육대회 참가지원 >

(단위:천원)

일자별	사업명	지급처	내역	금액	지적내용	비고
2016.3.10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신문	홍보	400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미첨부	
2016.3.10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주)■■■저널	홍보	500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첨부	
2016.5.20	대회참가자 선수복 등 구입	□□나	수영복 등 구입	12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미첨부	

○ 계룡시 △△△체육회 훈련용품 구입비 정산내역

< 2018년 충남△△△체육대회 훈련용품 구입 >

(단위:천원)

일자별	사업명	지급처	내역	금액	지적내용	비고
2018.6.26	농구휠체어 수리비	●●●대전총판	수 리 비	1,100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첨부	
2018.7. 6	훈련용품 구입	(주)■■■■■■■■라이즈	로잉머신	4,400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첨부	
2018.7.18	“	⊕⊕스포츠	역도기구 세트	14,180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첨부	

나. 위법 부당사항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II장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5. 신용카드 사용원칙 및 IV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계룡시 문화체육과에서는 계룡시△△△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 후 사업내용 변경 시 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하였으며, 신용카드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계좌이체 하였으며.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를 징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키는 등 보조금을 적법하게 정산처리하지 않았음.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보조금 변경 집행 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고 또한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지켜 사용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보조금 사업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실효대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도시건축과, 농림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00. 1. 29. 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와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자동 실효제가 도입되었다.
- 계룡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한다)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시설 중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및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2020.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표1]와 같다.

[표1]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실효대상 현황(2018. 12월현재)

(단위 : 천㎡)

시 설 구 분	결 정 면 적	집 행 면 적	미집행 전체				비고
			계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사업비(억원)	
합 계	12,685	10,945	1,740	1,619	1,592	2,463(100%)	
도 로	2,067	1,605	462	364	354	857(35%)	
공 원	1,089	425	664	664	664	847(34%)	
기 타	9,529	5,915	614	591	574	759(31%)	하천 등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계룡시(건축도시과)에서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국토계획법 제85조, 시행령 제95조 및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하 “가이드라인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계룡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을 수립하여 2017. 1. 20일 [표2]와 같이 공고하였다.

[표2] 계룡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총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	총사업비 (백만원)	1단계			2단계		비고
			'17	'18	'19	'20	'21년 이후	
계	38	101,367	3,398	15,590	20,043	46,164	16,172	
도 로	26	65,375	1,170	7,147	10,032	38,366	8,660	
주차장·광장	2	3,920	-	-	2,751	169	1,000	
공 원	-	-	-	-	-	-	-	미반영
완충녹지	3	273	-	273	-	-	-	
기 타	7	31,799	2,228	8,170	7,260	7,629	6,512	

※계룡시 공고 제2017-52호(2017. 1. 20) 자료 활용

나. 위법·부당사항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부적정

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단계별 추진계획 미반영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국토계획법」 제34조 제2항 및 제48조 1항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실효 대상이 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가이드 라인 매뉴얼” 제2장 기본원칙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계룡시(도시건축과)에서는 [표1]과 같이 공원의 실효대상이 664천㎡ (847억원, 34%)가 있음에도 2017. 1. 20. 수립 공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및 사업시행을 실시할 때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별로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 계룡시(농림과)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 부지매입계획” 수립 후 공원녹지 매입비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표3]과 같이 장기 미집행 6개 공원 중 뒷골공원 등 2개 공원만 우선순위 평가 없이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추진하고 있다.

[표3] 2020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계획

(단위 : ㎡, 백만원)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보 상 예상액	예 산 확보액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6개소	664,430	28,405	2,700		
문화공원	계룡시 금암동	502,790	22,239		1991. 7. 31.	
대실공원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59,703	1,509		1991. 7. 31.	
두계공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26,724	1,803		1991. 7. 31.	
뒷골공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6,172	450	1,200	1991. 7. 31.	2018년 예산확보
엄사공원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58,997	1,492	1,500	1991. 7. 31.	2018년예산확보
소공원6	계룡시 금암동	10,044	912		2014.11. 10.	2020년 이후 매입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국공유지 면적 제외)

-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 미흡 등 불합리하게 수립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이 2020. 7월 실효로 인하여 난개발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민원 발생의 증가가 예측되고,

- 또한 향후 발생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지가 저렴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 공원 뿐만 아니라 타 도시계획시설도 지속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만 보상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에 소홀히 하였다.

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 계룡시(도시건축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이드 라인 매뉴얼” 제3장 제2절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2020. 7. 1. 이후부터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또는 시설부지 매입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붙임1]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된 32개지구(1,014억원)중 도로 2-4호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172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및 추진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1,740천㎡) 사업비 2,463억원의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향후 2020.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도 우려된다.

- 계룡시(도시건축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예산확보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와 계획 부서간 업무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지연 부적정

- 계룡시(농림과)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표4]와 같이 5개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7조와 부칙 8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다.

[표4]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현황

(단위: m², 백만원)

공 원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조성계획		실효 시기
				수립고시일	용역비	
계	5개소	765,239			221	
문화공원	계룡시 금암동	517,623	1991. 7.31.	2015. 7.20	119	2020.7월
대실공원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81,500	1991. 7.31.	2015. 4.10		
두계공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46,850	1991. 7.31.	2010. 1.11	44	2020.7월
뒷골공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9,761	1991. 7.31.	2015. 9.21	28	2020.7월
엄사공원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09,505	1991. 7.31.	2007. 1.11	30	2020.7월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국공유지 면적 포함)

- 계룡시가 공원녹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2020년 계룡시 녹지기본계획(계룡시공고 제2011-281호, 2011. 7. 21.)” 과 국토계획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계룡시공고 제2013-283호, 2013. 7. 10.)한 “2020년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 인근 주민을 위한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체육시설 등의 조성과 기존 산림을 활용한 식생공간 연출과 산책로 등의 시설도입을 위해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 문화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21백만원 투자하여 [표4]와 같이 2007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 그러나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2019.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치 않아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20. 7월 실효될 처지에 있다.
- 그 결과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 용역비 221백만원 의뢰하여 수립 고시한 공원조성계획을 이용하지 못하고 2020. 7월 실효로 인해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계획적인 공원조성을 추진하지 못하여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 계룡시(농림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법」에 의거 2015. 9월까지 미 수립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2020. 7월 실효될 처지에 있어 용역비가 낭비된 것은 사실이며 이 사유가 타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매입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8억원

을 투입하여 2020. 7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대비 공원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시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립하시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입계획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실효가 최소화 되도록 예산확보 등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안전총괄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안전총괄과에서는 군사적 중요지역인 계룡시에 전시 대피시설이 전무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전시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대피시설의 필요성, 설치규모 등 종합적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 수행자	비 고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017.2.1. ~ 6.30. (150일)	26,280	(주)■■■지니어 링	결과물 불일치

* 안전총괄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용역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舊)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여 용역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발주 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안전총괄과에서는 2017년 1월 24일 “계룡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사업비 26,280천원으로 사업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아래(①+②)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용역 이행 절차 소홀

- 舊)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제11조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서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7년 1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 1일 착수계를 제출받아 2017년 6월 30일 준공검사를 하는 동안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준공 3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7년 7월 14일 용역대금을 지급 완료한 후 13일이 지난 2017년 7월 27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 자체 정보망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는 등 용역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결과물 도출

- 2016년 8월 9일과 8월 16일 각각 '대피시설 추진계획 검토보고'와 '대피시설 위치 및 규모선정 추진계획 검토보고'시 대피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규모로 2016년 9월 5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서면)에서 60,000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여 용역 추진을 설계하였으며,

용역명	대피시설 위치 및 규모선정 연구용역
사업기간	2016. 10 ~ 2017. 10.
사업규모	L=100m, (B=10m×H:3m)(가상)
용역비	60,000천원
과업내용	주민대피시설, 전시관람시설, 비상시 지휘본부 등

- 이후,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0천원으로 조정되어 2017년 1월 과업개요 '계룡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위치, 규모 등) 연구 1식'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상기와 같이 (주)■■■지니어링과 사업비 26,280천원으로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과업지시서의 과업목적에는 군 수뇌부가 위치한 군사적 중요지역에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전시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피시설의 필요성, 설치규모, 기본설계 방향, 재원 조달의 적정성 분석,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 등 종합적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따라 안전총괄과에서는 용역수행자인 (주)■■■지니어링과 합의하에 체결된 과업지시서에 준거하여 과업목적에 맞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에도,
 - 최종 제출된 "계룡시 민방위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표지를 제외한 총 164쪽 중 △기초자료조사와 관련법규 검토 73쪽(44.5%) △ 대피시설 여건분석 13쪽(7.9%) △ 안전체험관 구상, 관리운영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 78쪽(47.6%)으로 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인 대피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보다는 안전체험관 설치 연구용역으로 변경되면서 과업지시서의 요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용역을 완료하는 등 용역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안전총괄과에서는 상기 “계룡시 민방위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2016년 10월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국민안전체험관 표준모델」의 중형체험관급의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국민안전체험관 표준 모델 >

구 분	전용면적	체험시설	일 최대 체험인원(명)	건립비(억원)
대형체험관	1,500㎡ 이상	6개 체험존, 10개 필수 체험실	480명	200억
중형체험관	900㎡ ~ 1,500㎡	3개 체험존, 6개 필수 체험실	360명	120억
소형체험관	900㎡ 이하	1개 체험존, 3개 체험실	240명	50억

- 2018년 3월 7일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재정지원(소방안전교부세) 방안에 대하여 道(소방본부)와 협의한 결과, 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대상사업으로 2018년 ~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충남이 제외되고 2021년 이후에도 불투명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로 계룡시의 인구, 재원규모 대비 중형급 안전체험관 설립 운영의 타당성과 도내 및 타 시도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과업지시서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절차준수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 【기 관 명】 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
- 【행 정 상】 시 정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현황

구 분	계		음용		비음용		비 고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2016년	71	237	35	116	36	121	
2017년	22	245	15	127	7	118	
2018년	18	237	12	122	6	115	

* 상하수도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음용수의 경우 2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각 용도에 맞게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

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 2016년도 237개소, 2017년도 245개소, 2018년 237개소의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기수질검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질검사 미 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여부 등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확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마약류 취급자 교육업무 소홀

【기 관 명】 계룡시(보건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마약류 취급자 교육계획 수립 현황

연도별	교육대상	강사	교육장소	교육계획 수립일	비고
2016	신규개설 1년 이내 마약류 취급업소	○○○○팀장	사업장 방문교육	2016.07.15.	당해연도 수립
2017	신규개설 1년 이내 마약류 취급업소	○○○○팀장	사업장 방문교육	2017.08.06.	당해연도 수립
2018				미수립	
2019				미수립	

○ [표 2] 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 실시 현황

명 칭	종 별	취급자	소 재 지	허가지정일자	비고
ⓂⓂ약국	마약류소매업자	○○○	계룡시 두마면 ○○로	2017.12.26.	
ⓄⓄⓄ메디칼	마약류도매업자	○○○	계룡시 계룡대로	2018.01.22.	
ⓂⓂ약국	마약류소매업자	○○○	계룡시 장안로	2018.02.05.	

나. 위법·부당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 따르면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표 1] 과 같이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해당 교육 실시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년 및 2017년도는 당해 연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및 2019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등 교육 계획 수립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표 2] 와 같이 2017년 허가 또는 지정받은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 ○○○ 등 3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 그 결과, 교육의 본래 목적(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와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보건소장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환경위생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분일자
●●	○○○	계룡시 엄사면 번영0길	청소년 주류제공 (2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15일	'17.05.22.

나. 위법·부당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논산경찰서로부터 2017.02.01. 통보된 일반 음식점 ●●의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7.02.15. 기소유예 처분)건과 2017.02.13. 통보된 같은 업소 ●●의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7.04.24. 구약식 70만원 처분)건에 대하여 1차 통보된 청소년 주류제공 건은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2개월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으므로 1개월로 경감하고, 2차 통보된 청소년 주류제공 건은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통보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 적용이 되지 않고,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2분의 1인 1개월을 더하여 총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15일을 초과한 영업정지 2개월15일의 처분을 함으로써
 - 그 결과, 행정의 신뢰저하 및 영업주에게 부당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공간 및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현황]

공사명	계 약 업 체		개 요	계약금액 (천원)	공사(용역) 기간	비고
	업체명	소재지				
계		2건				
건축공사	ⓄⓄ건설(주)	금산군 금산읍	건축연면적 2,770.09㎡ 신축	3,208,462	2019. 1. 3. ~2019.10.29.	
건축 감리용역	ⓂⓂ엔지 니어링(건)	계룡시 서금암3길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45,347	2019. 1. 3. ~2019.11.28.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①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검토 소홀

- ⓄⓄ건설(주)에서 2018.12.13.일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적격 심사서류에 의하면 기계설비공사(도급금액 181,073천원)에 대하여 ■■■산업(주)에 하도급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 2019. 1. 3일 ⓄⓄ건설(주) 제출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 의하면 기계설비공사를 ■■■산업(주)에 하도급하지 않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2(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각서)에 의하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 계룡시(세무회계과)에서는 동 기준에 의한 각서(별표 6-2)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격심사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계룡시(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당일까지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시공업체[ⓄⓄ건설(주)]에 대하여 계약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부정당 업체가 다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② 건축 감리용역 착수서류 검토 부적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 업무의 대가산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 업무의 경우에는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건축감리용역업체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에서는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주 5일 배치(일당 2.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착수신고를 제출하였으며, 계룡시(사회복지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감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축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원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위반 건축행위자 행정조치 미이행

【기 관 명】 계룡시(도시건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허가(설계변경) 현황

연번	대지위치	주용도 (연면적)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설 계 변경일	기초철근 배근일	사 용 승인일	비고
1	엄사면 엄사리	제2종근생 (469.56㎡)	○○○	2016. 8. 18.	2016. 8. 24.	2016. 9. 27.	2016. 9. 1.	2017. 7. 14.	면적 증가
2	엄사면 향한리	제2종근생 (536.74㎡)	○○○	2017. 2. 14.	2017. 2. 24.	2018. 10. 22.	2018. 5. 29.	2019. 1. 7.	위치 이동
3	엄사면 광석리	단독주택 (214.66㎡)	○○○	2017. 3. 31.	2017. 4. 5.	2017. 8. 28.	2017. 4. 29.	2017. 9. 12.	위치 이동
4	두마면 입암리	공장 (2,366.95㎡)	농업법인(주) ○○프	2017. 11. 7.	2017. 11. 20.	2017. 12. 20.	2017. 11. 28.	2018. 1. 19.	위치 이동

나. 위법·부당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사면 엄사리 000-0번지상 000 등 4건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위치 등을 변경한 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허가(변경허가설계변경)신청 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함” 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득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계룡시(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관계자(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공사감리자, 건축주)에 대하여 행정처분(건축사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한 건축관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위법한 건축행위가 향후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초래되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및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의한 고발 및 징계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련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감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요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함은 물론 능률행정 및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계약현황]

계 약 자	계약일자	용 역 기 간	용역금액	비고
▣▣지기(주)	2017. 4.19.	2017. 4.19~2017.11.10.	76,000천원	

※ 자치행정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기(주), (주)●●렉스 2개 회사 입찰 참여]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
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계약업체인 ■■지기(주)에서는 본용역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수
요기관과 협의없이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천재용을 착수계 제출시 ○○○로
임의변경하여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인력 투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
치행정과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
하지 않은 등 착수서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기준 등)에 의하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을 위반한 ■■지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원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금 산출 및 갱신방법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권 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주차장 관리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건 명	주 소	면수 (면적)	준공연도	사업비 (백만원)	유료 여부	관리주체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	엄사면 번영1길	178면 (4,709m ²)	2015.10.	5,814	부	직영 (‘20년 위탁 예정)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엄사면 번영로	70면 (805m ²)	-	-	여	위탁

나. 위법·부당사항

① 국민권익위원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미반영

- 계룡시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2003.12.24.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조례 제83호)하였으며, 제정 이후 5회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2016.11.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4개 분야 8개 세부개선 과제를 권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개선 권고 내용을 2017. 11월 말까지 반영하도록 통보 하였다.

- 그런데도 계룡시 건설교통과에서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 4개 분야 8개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인 2016.11.14.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관련 조례에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② 위탁료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 없이 임의 감면

- 2016.11.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권고 하였다.
- 「계룡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 또는 ‘입찰가격’ 등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위탁료 산출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내역의 산술평균 금액에 20%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80%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주차장 위탁료 산출방법

위탁료 산출	[예상수입액(징수 예상액-인건비 등)+실제수입내역] / 2 × 20%
--------	--

- 그 결과 [표2]와 같이 2019년 기준 예정가격 1,879천원 대비 226.7%가 높은 4,300천원에 낙찰되는 등 위탁금액(예정가격) 과소 산출로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표2] 입찰결과 낙찰율

(단위 : 천원, %)

연도	입찰일자	위탁금액				선정방법	비고
		예정가격 (A)	낙찰가격 (B)	참여 업체수	낙찰율 (B/A)		
계		3,197	6,670	4	208.6		
2017	2016.12. 7	1,300	2,370	2	182.3	입찰	※ 2018년은 갱신 계약
2019	2018.12.10	1,897	4,300	2	226.7	입찰	

③ 관리위탁에 따른 갱신계약 시 평가 근거와 기준 부재

- 2016.11.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 에 따르면 관리위탁에 따른 갱신 계약시 평가 근거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도록 개선 권고 하였다.
- 그러나 「계룡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관리위탁에 따른 갱신 계약시 평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표3]과 같이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 위탁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절차 없이 2017.12.14.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결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 하였다.

[표3] 갱신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일자	선정 방법	위탁기간	수탁자	위탁 금액	비고
2017	2016.12.22	입찰	'07.01.01~12.31.	○○○	2,370	2018년 갱신 계약시 평가절차 없이 시장결재를 받아 계약 체결 [건설교 통과-88005호(2017.12.13.)]
2018	2017.12.14	갱신	'08.01.01~12.31.	○○○	2,370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2016.11.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 인 위탁료 산출 기준, 갱신 계약시 평가 기준 등 4개 분야 8개 세부개선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두계 장옥(소매점) 미 사용 및 용도변경 없이 미술관으로 운영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 업 명 :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사업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00-0번지
- 사업기간 : 2005. 8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 준 공 일 : 2005.11.28(사용승인 : 2006. 2.21.)
- 시설현황 : 건축 연면적 229.95㎡(지상 2층)
 - 1층(177.48㎡) : 소매점, 창고, 화장실, 2층(52.47㎡) : 사무실(2개)

<두계 장옥 사용현황>

구분	사 용 기 간	이 용 현 황	비 고
1층 (소매점)	'05.11월 ~ '15. 7월	▶ 미사용	현 재 미사용
	'15. 8월 ~ 12월	▶ “작은 미술관조성 사업”에 응모·선정(국비 140백만원)되어 두계 장옥 미술관으로 운영(○○○○재단)	
	'16. 1월 ~ '18.11월	▶ 미술품 전시관으로 일시적 이용(19회)	
2층 (사무실) ※ 2개소	'06. 4월 ~ '09. 4월	▶ 두계1리 마을회관으로 사용	현 재 미사용
	'08. 4월 ~ '12. 4월	▶ 대한◆◆회에서 사용	

나. 위법·부당사항

①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 미 사용 예산낭비 초래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 라 함은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계룡시에서는 2005.11.28.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00-0번지에 지상 2층의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을 총 사업비 30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을 투자하여 준공 하였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이 준공된 경우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 하는 등 운영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05.11.28.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이 준공 이후
 - 2층 사무실은 2006. 4.11. ~ 2009. 4.10.까지 두계1리 마을회관으로 사용 되었고, 2008. 4. 4. ~ 2012. 4.11.까지는 대한◆◆회에서 사용 후 감사일 현재(2019. 3월)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 1층 소매점도 준공 이후 1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2015. 8월 ○○ ○○재단에서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에 응모·선정(국비 140백만원)되어 2015.11월 ~ 12월까지 두계 장옥 미술관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6. 1월부터 2018.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재단, ◎◎◎◎ 협회계룡시지부 등에서 일시적으로 미술품 전시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 준공 후 13년 동안 한번도 장옥(소매점)으로 사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표1] 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유지보수비 1,350천원, 공공 운영비 4,800천원, 인건비 8,000천원 등 매년 총 14,150천원의 예산이 낭비 되고 있다.

[표1] 두계 장옥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 등)	인건비 (청소 등)
계	60,297	9,257	19,440	31,600
2015	5,474	2,282	3,192	-
2016	11,063	1,275	2,688	7,100
2017	14,310	2,850	3,960	7,500
2018	14,150	1,350	4,800	8,000
2019(계획)	15,300	1,500	4,800	9,000

※ 두계 장옥 천정 누수로 2019. 1회 추경시 시설유지 보수비 20,000천원 편성 예정

② 두계 장옥(소매점)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 사용(미술품 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두계 장옥(소매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가 제출된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표2] 와 같이 2016. 1. 12.부터 2018.11. 6.까지 총 19회에 걸쳐 ○○○○재단, ◎◎◎◎협회계룡시지부 등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용허가 적법 여부 등의 검토도 없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두계 장옥(소매점)이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술품 전시회 공간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2] 두계 장옥(소매점) 사용 · 수익허가 신청 현황

구분	신청 횟수	신청자
계	19회	
2016년	8회	○○○○재단 등 3개 단체
2017년	6회	◇◇◇◇예술연구소 등 5개 단체
2018년	5회	◎◎◎◎협회계룡지부 등 3개 단체

③ 두계 장옥(소매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없이 미술관으로 사용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미술관으로 운영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2015.11월 ~ 12월 까지 두계 장옥 미술관으로 운영 하였으며, 2016. 1.12.부터 2018.11. 6.까지 총 19회에 거쳐 미술품 전시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내버려 두고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두계 장옥 소매점 및 사무실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규정에 따른 기금 미 설치 및 기금 운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정책예산담당관외 2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설치 현황

('19. 3. 15.현재, 건)

구 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기금 설치 현황				비 고
	설치대상	설 치	미설치	미설치 율	
계룡시	10	8	2	20%	

※ 미설치 기금(옥외광고 발전기금,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 <표2> 미 설치된 기금의 재정수입 예상액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근거		기금 재정 대상		비 고
	규정	조례 제정일	재 원	적립 대상 수입액	
계	2건			76,944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법령 조례	'09.02.10.	수수료, 과태료 등	76,994	
여성발전 기금	법령 조례	'03.12.10.	출연금, 수익금 등	자치단체 출연금	미 출연으로 재원 없음

※ 기금적립대상 수입액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3년('16~'18년) 수입액

- <표3> 최근 3년간 각 기금별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단위 : 회)

구 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운영계획	결산보고	운영계획	결산보고	운영계획	결산보고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	개 최 : 4 미 개최 : 4	미 개최 : 8	개 최 : 2 미 개최 : 6	미 도래	개 최 : 4 미 개최 : 4	미 도래

나. 위법·부당사항

①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미 설치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기금운용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9.02.10. 제정)'와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3.12.10. 제정)'을 제정하고도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른 수입금(옥외발전기금 최근3년간 수입금 76백만원/여성발전기금은 미출연으로 없음)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통합 등의 조치 없이 '19.03.16.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규정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②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영계획안의 작성) 및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8개 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정책예산담당관 등 8개 부서에서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없이(또는 지연 심의) 市의회에 제출 [17회계 기준 운영계획 4개부서 미심의(50%), 결산서 8개 부서 미심의(100%)] 하는 등 각 기금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소홀하여 기금별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운영과 관리를 부적정하게 조치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즉시 설치하시고, 각 기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계룡시(사회복지과외 1개부서)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회복지시설 비 지정 후원금 부적정 집행현황('16~'18년)

(단위 : 천원, %)

구 분	비 지정 후원금	간접비 50% 이상 집행현황			사용이 금지된 집행액	관련부서
		직접비	간접비	간접비율		
계	67,541	1,433	3,187		268	
▲▲요양원	4,620	1,433	3,187	68.9%	-	가족행복과
△△△△△ 단기보호센터외1	62,921	-	-	-	268	가족행복과 사회복지과

※ 비 지정 후원금은 간접비 지출에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사용 금지됨

나. 위법·부당사항

- 「사회복지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운영지침)-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또한,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자산취득, 총당금 등)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등),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등으로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에서는 3년('16~'18년)간 비지정 후원금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50%를 초과한 68.9%(3,187천원)를 집행한 ▲▲요양원과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 등 268천원을 사용한 △△△△△단기보호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후원금 사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을 저해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사회복지시설의 비 지정 후원금 사용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9년 산불방지업무 소홀

【기 관 명】 계룡시(농림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일	근거	내 용	비고
2019. 02. 01.	「산림보호법」 제29조	- 산불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표2】 2019년 산불진화장비 구입계획

진화장비 명	수량	예산액(천 원)	구입여부	비고
개인진화장비 등 2종	35점	11,850	미 구입	

나. 위법 · 부당사항

- 계룡시 농림과에서는 2019년 산불방지 대책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산불방지대책 수립 지연

- 「산림보호법」 제29조 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계룡시장(농림과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산불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 농림과에서는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법령에서 정한 시한보다 5일이 늦은 2019. 02. 01.(봄철 산불조심기간) 수립한 사실이 있다.

2. 봄철 산불조심기간 미 공고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기상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가능), 산불조심기간, 산불발견 시 신고요령, 산불방지와 관련한 당부사항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장(농림과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사항을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 농림과에서는 2019. 02. 01.부터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도 관련사항을 2019. 03. 감사일 현재까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산불진화장비 미 구입

-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장(농림과장)은 가급적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에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에 대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계룡시 농림과에서는 2019. 02. 01.부터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19. 02. 24.(일) 11:00 전국에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는데도 2019. 03.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구입예정인 개인진화장비, 개인진화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 등 2종 35점을 구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위 사실과 같이 산불방지대책 수립 지연, 봄철 산불조심기간 미 공고, 산불진화장비 미 구입 등 산불방지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불재난으로 인한 국토의 보전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법령에서 정한 시한 내 산불방지대책 수립하시고,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시기 바라며, 금년 산불진화장비를 조속히 구입하는 등 산불방지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위탁교육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舊) 지역경제과(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들에게 실질적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민간위탁 교육용역」을 추진하였다.

< 표 1 >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위탁교육 용역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명)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금액	대상	용역수행자	예산목
계		25,339	42	2개 업체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	2018.6.18. ~ 12.28.	15,718	25	△△직업 전문학교	행사 운영비
전기기능사 과정	2018.6.26. ~ 12.28.	9,621	17	(주)▲▲▲▲ 전기학원	

나. 위법 · 부당사항

①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기 <표 1>과 같이 2018년 6월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민간위탁 교육 용역”을 사업비 25,339천원으로 2018년 6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직업전문학교 및 ▲▲▲전기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 사업비 25,339천원은 당초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한 39,821천원으로,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전년도(2016년)에 개최한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 결과 연계 취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2017년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 전기기능사 과정) 위탁 교육 용역비’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민간위탁 교육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② 용역계약서 검토 소홀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8년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과정은 계룡시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전기기능사 취득 과정은 대전시 소재 (주)▲▲▲ 전기학원과 각각 “2018년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수탁업체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제출한 위탁교육비 소요예산을 보면 강사료, 유류비, 장비관리 및 기타 등 6개 항목 20,000천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소요예산별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 사업자가 정산결과를 제출하면서 지게차 보조미러 구입(20천원), 타이어 교환 등 지게차 수리비(1,997천원) 등을 장비관리 및 기타에 포함하였으나, 장비관리 및 감가상각비는 피 교육생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교육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위탁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 특히, 건설기계실습장(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0-0번지 외 9필지)은 △△직업전문학교 부속 토지로 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해당 학교 대표인 ○○○이 2016.4.1.부터 2020.3.31.까지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탁교육기간(4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위탁교육비에 포함하여 정산처리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표 2> △△직업전문학교 교육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및 금액(천원)		정산내역 및 금액(천원)	
계		20,000		19,175
강사비	내부강사 3명	7,650	내부강사 3명	6,375
관리인건비	관리자 2명	1,887	전임, 보조자 2명	1,887
유류비	지게차 2대 유류비	4,284	지게차 2대 유류비	5,100
일반관리비	다과비, 문구비	350	교재, 다과, 문구용품	462
장비관리비	오일 및 소모품 교환	500	오일교환	694
			지게차 보조 미러 구입	20
기타	감가상각 및 기타관리	5,329	지게차 수리비(타이어 교환 등)	1,997
			토지임대료(4개월)	2,640

- 또한, 전기기능사 취득 과정 수탁업체인 (주)▲▲▲ 전기학원에서 <표 3>과 같이 제출한 위탁교육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 시설사용료로 책정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건물 임대료 등 1,708천원은 해당 학원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학원에서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최초 위탁교육비에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처리 하는 등 용역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 3> ▲▲▲ 전기학원 교육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및 금액(천원)		정산내역 및 금액(천원)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18,700		14,290
강사비	외부강사료	4,840	외부강사 4명	4,570
관리인건비		3,480	전임 1명 인건비	1,740
취업관리	인터넷발신용	100	8/17 모아샷	100
행사비	입교, 수료, 워크숍	510	입교·수료식비	226
일반관리비	사무용품, 다과 등	680	사무용품 등 구입	560
기타경비	실습용 기자재 구입	7,382	시험자재 구입	5,386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학원 월 임대료	1,708	4개월 비용 지급	1,708

【처분요구】

계통시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감독업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한다.)』 제43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교통시설(대로, 중로,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개수/km)

종 류	전 체		개 설		미 개 설		비 고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 계	380	125	345	94	35	31	
대 로	16	31	10	7	6	21	
중 로	92	47	87	48	5	2	
소 로	272	47	248	39	24	8	

※ 계룡시 제출자료 활용

나. 위법·부당사항

1)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관리 소홀

-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 명시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 완료보고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16년~2018년 기간중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 4개 지구를 확인한 바,

[표1]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노선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실시계획인가			실제추진				비고
			인가일 (변경)	공사 착수	공사 준공	공사 착수	공사 준공	완료 보고	완료 공고	
합 계		4개지구								
파라디아@ ~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L=1.48km B=10.7m	10,981	16.09.20	16.09.20	18.12.31	16.09.29	18.08.02	미이행	미이행	
염선재~계룡역 공영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L=300m B=4~6m	131	17.04.10	17.04.10	18.04.10	17.05.08	17.10.10	미이행	미이행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도로개설 L=500m B=12m	2,847	17.03.30	17.03.30	18.03.30	17.01.10	18.04.30	미이행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변경 미이행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4)	도로개설 L=360m B=10m	951	15.08.20	15.08.20	19.12.31	18.01.05	18.09.02	미이행	미이행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실시계획인가전 사업을 착공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한 4개지구는 모두 사업을 준공하고도 완료보고 및 완료 공고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

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당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소관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토지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일 당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유상취득 및 무상귀속 여부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붙임1]와 같이 국유지가 포함된 2016년~2018년까지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 4개지구를 확인한 바, 관련실과로부터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32필지 6,474㎡에 대하여 무상귀속 및 유상 취득협의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제로 준공하고도 국유지 관련기관과의 무상귀속 및 유상 취득하지 않아 지목변경 어려움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
- 계룡시는 감사결과를 받아 들이면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절차 등을 반드시 사업기간내에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이전 특정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근무성적 실적 가산점 부여 현황

- 대상업무 : 2017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수상
- 대 상 자 : 「규제개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추진계획(기획감사실-1438호, 2017.03.07.)」 근거로 2017.10.11.일 대상자 선정
⇒ 지역경제과 지방○○주사 ○○○ 등 10명
- 실적가점 부여 : 최우수(1.0)~장려(0.25)으로 평정기간 비율로 반영
- 가산점 인정 근거 :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2017.12.26.)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함에 있어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되,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계룡시 자치행정과에서는 2017.12.22.일 2017년도 하반기 근무 성적평정순위 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의안건으로 2017.03.07.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규제개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추진계획」을 근거로,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실적가점 반영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사무에 대한 탁월한 근무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코자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이전에 모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사전공개하여 관련 가산점 부여에 따른 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평성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가산점 반영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전인 2017.10.11.일 기획감사실에서 확정된 1회성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자체 공모심사 결과에 따른 지방○○주사 ○○○ 등 10명의 수상자에 대한 근무성적 가산점(1.0~2.5)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부여에 있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가점대상 평가에 소속공무원이 공정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 미 신고

【기 관 명】 계룡시(문화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룡시에서는 도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2013.11.11.)된 계룡 ○○고택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인문음악회 및 문학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 계룡 ○○고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착수 및 완료 미신고 현황)

신 청 인	신 청 용 도	신 청 규 모	허가일자	시행일	비고
계룡시장	◇◇문화재 인문음악회	무대, 음향, 조명 설치 등	2017. 9.22.	2017. 9.23.	
계룡시장	◇◇문화재 인문음악회	무대, 음향, 조명 설치 등	2018. 9.10.	2018. 9.15.	
계룡시장	○○○○ 신인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의 밤 행사	무대, 음향, 조명 설치 등	2018.10.15.	2018.10.19	

※ 자료근거 : 문화체육과 자료제출

나. 위법·부당사항

- ①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의하면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안에서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제74조(준용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정문화재도 동법 제35조(허가사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신고사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고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계룡시(문화체육과)에서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계룡 ○○고택에서 문화재 활용을 위한 ◇◇문화재 인문음악회 및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착수 및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충청남도(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알림」으로 실시한 문서에도 착수 및 완료시 신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룡 ○○고택에 대한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직원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미흡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비 고
계	19	17	2	-	
2015이전	19	17	2	-	
'16~'18	해	당	없	음	

※ 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대해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통행로 체계 등 조사 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서는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 등 차량감속유도 시설과 보도조성,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등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감사기간('19.3.4~3.15)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 19개 지구 중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구역지정 범위와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기타 도로부속시설 설치 상태를 표본조사 해본 결과 [표2]와 같이 총 11건의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차량운전자 및 보호구역 이용 교통약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현황 (단위 : 건)

총계	보호구역 통합지정 미 흡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				
		계	위 치 부적정	미지정 구간 시설물 설치	시 설 미설치	시설물 관리 미흡
11	1	10	2	2	2	4

① 교통약자 보호구역 통합지정 미흡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3.1.3(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1개 보호구역의 해제 지점과 새로운 보호구역의 시점간 거리가 200m미만일 경우 통합하여 관리하고 시·종점 교통안전시설을 전체 구간의 시·종점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 업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인접한 업무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2006년 지정)과 160m이내의 도로로 근접되어 있고[그림1 참조], 미지정 구간에도 보호표지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1] 엄사초등학교-엄사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②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관리 미흡

① 교통안전표지 위치 부적정 및 안전시설 미설치

- 「통합지침」 5.1(교통안전표지)에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를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구역내에 병행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5.8.3(고원식 횡단보도)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단차가 없을 경우 점자 블럭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신도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점(양정어린이공원 앞)표지 위치 부적정 및 미지정 보호구역(파라디아 아파트)시설물 설치(표지 및 노면표시), ③금암초, 엄사초 안전시설 미설치 등 총 6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림2] 안전표지 위치 부적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 미지정 구간 시설물설치



- ① 신도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설치 오류 → 시종점(양정어린이공원 앞 부근) 조정 및 미지정 보호구역(파라디아 아파트 진입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정 등 검토필요



③ 엄사초 / 엄사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설치 오류 → 시종점 조정 또는 표지위치 조정필요

[그림3]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시설 미설치



④ 금암초교- 점자블럭 및 진입억제말뚝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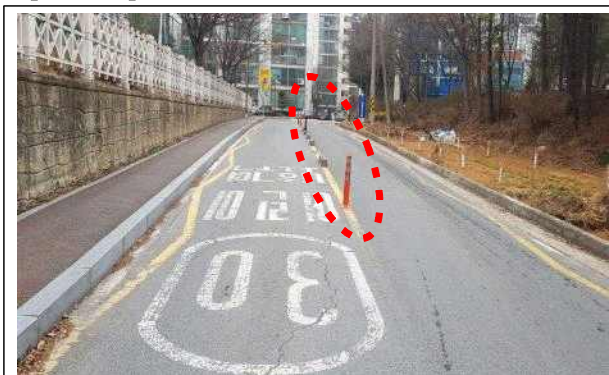


⑤ 엄사초교 - 진입억제말뚝 미설치

②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관리 미흡

○ 「통합지침」 2.3(보호구역의 관리)에 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초 지정과 개선에 의한 효과를 지속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아래와 같이 총 4개 보호구역이 확인되었다.

[그림4] 안전시설 미정비



① 숲어린이집- 중앙분리대(규제봉) 파손 및 노후



② 신도초교 - 노면 시설노후



③ 두마초교 - 규제봉 파손 및 노면표시 노후



④ 엄사유치원 - 노면표시 노후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 관리 하시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미설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팔거리 마을 경관개선사업 하자관리(검사) 소홀

【기 관 명】 계룡시(건설교통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 업 명 : 팔거리 마을 경관개선사업(1,2차)
- 사업위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2리 일원
- 사업내용 : 생태둑병정비, 쉼터조성, 꽃피는 팔거리 조성 등 1식
- 사업기간 : 2017. 9 ~ 2018. 9
- 도 급 액 : 493백만원(국 345, 도44, 시104)
- 도 급 자 : 1차[(주)◇◇◇컴퍼니 ○○○], 2차[◎◎건설(주)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와 시행규칙 제69조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하자사항 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에서는 「팔거리 마을 경관개선사업(1,2차)」을 1차(2017.09.08.~2017.11.23./ (주)◇◇◇컴퍼니 ○○○), 2차(2018.03.14. ~2018.09.09./◎◎건설(주) ○○○) 계약체결 시행하고, 반기별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1차 공사의 연산홍 등 조경수 고사와 2차 공사의 타일 벽화의 색번짐 등이 발생 하였음에도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기간 재조사 결과 연산홍의 3,550주 중 약 710주, 잣나무 15주 중 3주 고사 및 타일벽화 72m² 중 40m²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 (표1 및 사진1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마을 경관저해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표1] 하자발생 현황

(단위 : 주, m², %, 천원)

구 분	공사현황		하자 발생 현황				비고
	주/면적 (비율)	금액	양 호		고사 및 색번짐 등		
			주/면적 (비율)	금액	주/면적 (비율)	금액	
합 계	-	51,676	-	29,764	-	21,912	
연 산 홍	3,550 (100)	17,396	2,840 (79.9)	13,895	710 (20.1)	3,501	1차
잣 나무	15 (100)	1,780	12 (80)	1,425	3 (20)	355	1차
타일 벽화	72 (100)	32,500	32 (44.4)	14,444	40 (55.6)	18,056	2차

※ 금액산출은 제경비 미적용 금액(계룡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1] 하자발생 현황 사진대지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팔거리 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를 즉시 이행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개선(권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공제금지원인력 대상자 거주지·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거주지별		연령별					비 고
		관내	관외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합계	30	13	17	1	13	12	3	1	
2018	10	4	6	1	4	5	-	-	
2019	20	9	11	-	9	7	3	1	

- 공제금지원인력 출연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집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환수액	잔액	이자발생	반환금액	
2018	14,400	8,800	1,200	6,720	9	6,729	취소자 2명 환수
2019	43,200	-		43,200			집행 시기미도래

※ 계룡시 자료제공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예산편성 일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계룡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2018.2.20.)」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계룡시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공제가입 핵심인력에 대하여 1인당 월 12만원씩 5년간 정액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2018년은 10명분 14,400천원, 2019년은 20명 추가한 30명분 43,300천원을 출연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 따라서 계룡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공제사업에 시비를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제사업비를 지원받는 핵심 인력은 관내 주민이거나 장기간 근로가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므로 이를 업무협약에 포함하는 등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8-2019공제사업비로 지원한 핵심인력 30명의 주소 및 연령을 확인한 결과 계룡시 관내 거주자는 13명(42%), 관외거주자 17명(58%)으로 관외 거주자가 과반을 넘고, 연령도 60세 이상(65세)도 있으며, 취소자 2명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 등 관외 거주자가 많고 고령자도 지원하는 등 핵심인력 대상자 선정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협약서에 지원대상을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룡시 맞춤형복지제도 예산편성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현 황 > 2016 - 2019년 계룡시 맞춤형복지제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비 고	
편 성 기 준	1인당 기준액	1,132	1,161	1,290	1,290		
	지급대상인원	460	465	468	497		
	예산편성과목 (통계목)	201-04 맞춤형복지시행경비	좌동	좌동	좌동		
편 성	합 계 (전년대비증가율)	489,200 -	701,975 (43.5%)	788,449 (12.3%)	893,500 (16.6%)		
	기 준 준 수	1인당 기준액	1,132	1,161	1,290	1,290	
		201-04 맞춤형복지시행경비 (단체보험료 포함)	489,200	545,670	592,350	657,900	
	기 준 미 준 수	201-02 일반운영비 소계	0	156,305	196,339	235,600	
		단체보험료 (당초예산)		156,305 (184,000)	148,339 (184,000)	183,600 (183,600)	
		건강검진비			48,000	52,000	지급대상 격년제 운영

※ 계룡시 자료제출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기준경비) 제2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기준경비)

제5호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은 각 시·군 및 중앙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해당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편성방법〔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단체보험, 장례비지원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방법의 설정(통계목)을 기준을 위배하여 일반운영비(201-02)에 단체보험료 명목으로 156,305천원을 별도로 편성(당초 184,000천원 편성 후 추경에서 낙찰차액 삭감)하였고, 또한 2018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지침(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2017.11.15.))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액은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상인 단체는 17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8년도에 예산편성방법의 설정(통계목)을 위배하여 일반운영비(201-02)로 단체보험료 148,339천원(당초 184,000천원 편성 후 추경에서 낙찰차액 삭감)과 건강검진비 24,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19년에도 예산편성방법의 설정(통계목)을 위배하여 일반운영비(201-02)로 단체보험료와 건강진단비 235,600천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단체보험료와 건강검진비를 예산편성방법의 설정(통계목)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통시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료와 건강검진비를 맞춤형복지시행경비(201-04)로 편성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2017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 지방행정서기보 서열
 - 당초 : 1순위 ○○○, 2순위 ◇◇◇, 3위 ◎◎◎, 4위 △△△
 - 변경 : 1순위 ○○○, 2순위 △△△, 3위 ◎◎◎, 4위 ◇◇◇
- 2018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 지방행정서기보 서열
 - 당초 : 1순위 ◇◇◇, 2순위 ■■■
 - 변경 : 1순위 ■■■, 2순위 ◇◇◇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에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 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에서는 2018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서기보 서열(1순위/◇◇◇, 2순위/■■■)명부를 바꾸어 결정하여 ■■■를 수평정(68.60점), ◇◇◇을 우평정(58.70점)을

받게됨으로 ◇◇◇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으며,

- 또한 2017년 하반기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4명의 평정위원을 구성하였고 기획감사실장 ■■■을 제외한 3명이 참석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대상 직렬 중 지방■■■주사에 대하여 1위 ○○○(수)70점, 2위 ◇◇◇(우)63.90점, 3위 ◎◎◎(우)59.70점, 4위 △△△(양)52.90점으로 심사결정 하였으나 2018. 1. 3일자로 근무성적 순위조정 오기를 하였다면서 부시장 결재를 득한 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였다.
 - 1위:○○○(수)70.00점, 2위:△△△(우)63.90점, 3위:◎◎◎(우)59.70점, 4위 : ◇◇◇ (양) 52.90점으로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겠으나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는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불참했던 ■■■에게 추후 서면 결의케 하고 정정하는 등 근무평정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순환 근무를 통한 보직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직관리 운영의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연도별 승진자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계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자체승진	전보	자체승진	전보	자체승진	전보	자체승진	전보	자체승진	전보	
계	133	19	27	-	46	-	35	6	25	8	
일반승진	122	19	24	-	41	-	33	6	24	8	
근속승진	11	-	3	-	5	-	2	-	1	-	

※ 계룡시 자료제출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계룡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전보임용 보직관리 기준」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 임용권자는 근무의 곤란성·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며 시 분청의 전입을 직속기관 및 면·동 사무소 근무자 중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 공허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토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4년간 총152명을 승진 임용한바 있으나, 그중 133명을 자체 승진 임용하는 등 직속기관 및 면·동사무소 근무자들에게 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고 순환 근무를 통한 보직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능력발전과 사기 저해의 요인이 되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앞으로 순환 근무를 통한 보직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정·현원 대비표 관리소홀

【기 관 명】 계룡시(자치행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없음

나. 위법 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의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되어있다.
- 정원.현원 대비표의 작성관리는 실.과단위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 단위로 직종, 직렬, 직급의 결원과원, 정.현원 등의 정확한 현황과 수요를 판단케 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 자료이다.
- 그런데도 계룡시에서는 현재까지 정.현원대비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인사·통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인사기록.통계가 되는 정.현원대비표를 매월 말일 작성하여 비치해 두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하대실 도시개발 추진 관련 도로개설사업 등 협의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일반현황

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 위치 및 면적 :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 m²

계(m ²)	주택건설용지				업무시설 용 지	기반시설 용 지
	소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 거		
347,183 (100%)	78,738 (22.7%)	21,517 (6.2%)	42,725 (12.3%)	14,496 (4.2%)	70,102 (57.1%)	198,343 (57.1%)

○ 수용인구 및 세대수 : 2,154인, 약 816세대

○ 사업기간 : 2012~2019년(8년)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방식)

○ 사업시행자 : 계룡시 (공영개발)

○ 사업추진 경위

- 2014.01.10. :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충남도고시 제2014-10호)

- 2014.10.15.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충남도고시 제2014-296호)
- 2014.12.3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충남도고시 제2014-430호)
- 2015.03.~09. : 감사원 감사(지방건설사업 지방재정 운용실태)
 - (조치사항)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등 적법 절차 이행 추진 방안 마련
- 2015.10. :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전말 보고(완결)
- 2017.12. : 타당성 재조사 추진(행전안전부 의뢰)
- 2018.03.~2019.01. : 타당성 재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9.01. :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② 충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외		
계	2건		243,200	9,100		89,100	150,000
신규사업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L=2,443m B=8~30m,5개소	18,200	9,100	-	9,100	-
신규사업	계룡하대실 도시개발	대실지구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230,000	-	-	80,000	150,000

※ 계룡하대실도시개발사업 : 계룡대실지구 604,251㎡, 계룡하대실지구 354,191㎡

○ 사업추진 경위

- 2012~2014년 :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12.29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 (충남도 고시 486호)
- 2018. 12. : 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 분할측량
- 2019. 01. : 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 보상계획 공고

③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하천기본계획 고시 및 추진 현황

하천명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대실지구내 하천연장	하천기본계획고시	비고 (관리청)
계	3개 하천	4.82	0.71		
지방하천	농 소 천	2.0	0.06	충남도고시 제2005-120호 (2005.7.11)	도 지 사
소 하 천	개 티 천	0.92	0.15	계룡시고시 제2015-80호 (2015.12.15.)	시장·군수
소 하 천	용수말천	1.90	0.50	계룡시고시 제2015-80호 (2015.12.15.)	시장·군수

나. 위법·부당사례 (개선하여야 할 사항)

1)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연계,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불합리 개선 필요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목적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 부문별 계획 제11절 기반시설계획 수립시 계획 기준에 부합하게 계획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지방하천(농소천) 및 소하천(개티천, 용수말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하대실 도시개발 사업계획 포함 시행)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계 및 연결도로로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충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5개소에 대해 2012~2014년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공사 착공단계 임.
- 또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이 2015.3~9월 감사원 감사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등 적법 절차 이행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는 감사원감사 처분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2018.03~2019.01 타당성 재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재, 중앙투 용자심사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변 개발여건 상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5개 지구의 경우, 지구별 투자분석을 통하여 하대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병행 추진하여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도시건축과(도시개발팀), 농소지구 도로개설 사업은 건설교통과(도로시설팀)에서 각각 추진, 중복투자 및 사업추진 지연 초래가 우려되므로 도로개설사업 5개 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지구별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효율적 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립 추진함이 타당함.

[그림1-사업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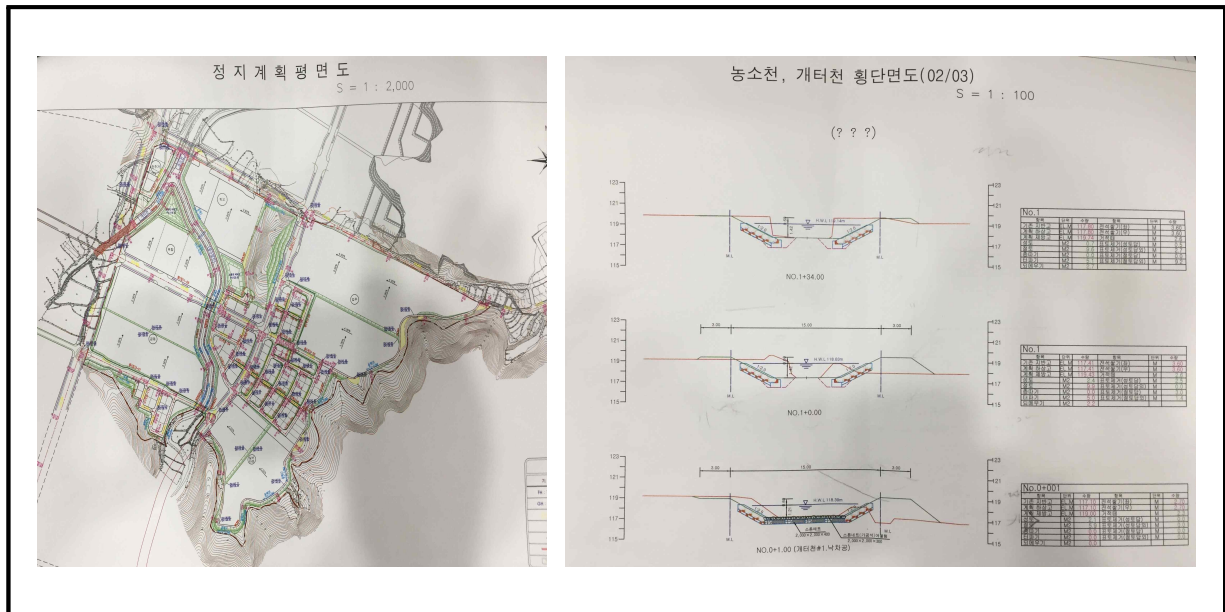


2)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하천관리 계획 불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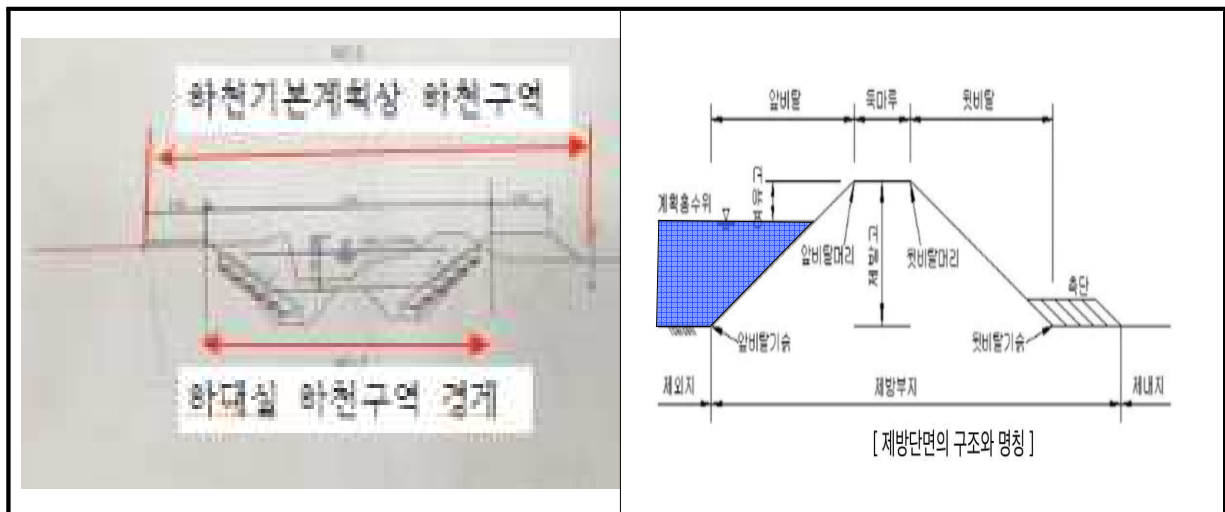
-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병행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기본 계획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고시된 기본계획상 하천구역과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토지이용계획상 부지 경계(하천구역 및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분명하게 획지하여 사업량(절성토) 및 사업비 중복투자 예방을 도모함은 물론, 장차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하천 구역 변경고시 등 당해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관리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약과 필요조치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그러나, 하천관리부서의 경우, 하천구역을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 계획 고시된 경계는 제내지 경계인 뒷비탈 기슭을 경계로 사업시행 될 것으로 관리(하천구역)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서는 효율적 토지 이용계획상 하천 제내지측 제방 앞비탈머리를 하천경계로 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 하천관리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부서간 서로 다른 시설별 경계선 상이로 인한 사업비 과대 및 중복투자 사전예방과 당해 시설관리(재산관리 등)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시설별 경계선을 명확히 조정 보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2-하대실지구 부지정지계획 및 농소천 등 도시개발사업 경계]



[그림3-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수말천 부지경계 및 하천단면도]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의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연계된 도로개설, 하천관리계획에 대하여 재 검토한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사업계획과의 효율적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계룡시(도시건축과, 농림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일반현황

①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현황

대 상	사업량(km ²)	목표년도	사업비(천원)	사업(용역) 기간
2030계룡도시 기본계획수립	60.702	2030년	339,460	2017.5.16.~2020.5.12

<사업추진 경위>

- 2017.05.16. : 2030 계룡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 2017.05.19. : 용역착수
- 2017.11.06.~2018.05.02 : 용역 일시중지 및 해제
 - 정지사유 : 지속가능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반영
- 2018.11. 09 : 기본구상을 위한 종합분석 및 미래상 설정

②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대 상	사업량(km ²)	목표년도	사업비(천원)	사업(용역) 기간
2035계룡공원 녹지기본계획	60.702	2035년	87,552	2018.2.8.~2019.8.5

<사업추진 경위>

- 2017.09.15. : 2030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 보고
 - 사업비 : 99,587천원(계약금액 87,552천원)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2017.02.08. :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 2018.11.09 : 기본구상을 위한 종합분석 및 미래상 설정

나. 위법·부당사례

- 계룡시에서는 상위 및 관련 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주)●안 대표자 ○○○과 (주)◆◆종합기술공사 대표자 ○○○과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을 2017.5.16. ~2019.11.18.까지 총 339,460천원으로 계약하고 용역 추진 중
 - 2018.11.06.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충남도) 반영을 위해 2017.11.06. ~ 2018.05.01.일까지 용역중지 하였다가 2020.5.12.일 용역준공을 목표로 감사일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음.
-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중 공간시설(공원/유원지) 계획시 ‘기존자료 활용’ 계획으로 소요경비 산정계상시 도시계획기초조사 ‘제야호포 공간시설’ 기초조사 인건비로 책임기술자 등 현장조사 품을 적용 발주 추진하는 중에 있는 바
 -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공간시설(공원/녹지) 계획의 경우, ‘기존자료 활용’ 으로 사실상 기 수립되었거나 계획수립 중인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수립 그대로 활용 반영할 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 계룡시에서는 2017.9.15일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 2018.2.8. “2030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을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과 87,552,800원에 계약 2019.8.5. 준공계획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어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기일 내 공원/녹지 기본계획인 ‘ 기존자료 활용 ‘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건비 품 적용 시 아래와 같이 약 1,350천원이 중복 계상되어 부당하게 집행 중에 있음.

- 또한,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 계룡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당해 용역시행 ‘계획의 범위 중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계룡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경우, 2018.11.09.일 공원녹지 기본 구상을 위한 종합분석 및 미래상 설정 시(중간보고) 시간적 범위 목표 연도를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으로 변경, 중간보고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이 목표연도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바
 - 용역시행 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는 ‘ 계약대상자와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과업내용 변경요청 및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등 과업내용 변경절차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목표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 필요성 및 당위성 등 여건 변화에 대해 면밀 분석 검토 후(별도 당위성 등 면밀 검토 결정 필요) 동일 목표연도를 설정 시행하여 계룡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비전을 마련, 계룡시의 정책계획 및 종합계획, 전력계획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과업내용이 변경 절차 없이 목표연도 등 과업내용 변경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공정한 계약원칙에 위배되게 하고 있음.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중복 계상된 인건비 1,350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과업 목표연도 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등에 따른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이후 용역계약에 있어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구증가 시책(정착 지원금) 개선방안 마련

【기 관 명】 계룡시(정책예산담당관)

【행 정 상】 권 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계룡시 인구변화

- 최근 5년간의 계룡시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말 기준 계룡시 인구수는 43,731명(15,860세대)으로 인구수 및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및 세대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수	40,552	41,730	42,634	43,967	43,731
세대수	13,894	14,397	14,858	15,647	15,860

- 연령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0~4세), 아동(5~19세), 청년층(20~34세)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35~64세),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장년(35~64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변화]

연령별	2012년		2015년		2018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합계	41,550	100.0	41,730	100.0	43,731	100.0
영유아(0~4세)	2,215	5.3	2,017	4.8	1,830	4.2
아동(5~19세)	10,121	24.4	9,606	23.0	9,470	21.7
청년(20~34세)	7,020	16.9	6,866	16.5	6,865	15.7

중장년(35~64세)	18,991	45.7	19,646	47.1	21,120	48.3
노령인구(65세이상)	3,203	7.7	3,595	8.6	4,000	10.2

나.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

- 계룡시에서는 저 출산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다른 시·군으로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 7.30.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일반 전입세대’ 에게는 5만원,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이 관내에 정착하는 경우 ‘제대군인’ 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현황]

주요내용	지급기준
전입세대 지원금 5만원	전입신고 6개월후
제대군인정착지원금 20만원	전입신고 6개월후
다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10만원	입학일 기준 관내 거주
귀농인정착지원금	신청서 제출 2년후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전입 즉시
고등학생, 대학생 문화예술공연 50%이내 할인	관내거주 학생증 확인

- 계룡시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36세대가 전입하여 총 275,990천원을 지급 하였다. 이 중 일반 전입자는 5,197세대 (97.4%)로 248,19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제대군인은 139세대(2.6%)로 27,8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총 전입세대 대비 제대군인 전입 비율은 2.6%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 전입세대 및 제대군인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계(A)			일반전입세대			제대군인(C)			제대군인 비율 (C/A)
	예산액	지급액	지급건수	예산액	지급액	지급건수	예산액	지급액	지급건수	
계	333,330	275,990	5,336	277,930	248,190	5,197	55,400	27,800	139	2.6
2016	77,000	65,540	1,205	70,000	62,340	1,189	7,000	3,200	16	1.3
2017	124,130	105,850	2,295	107,930	98,250	2,257	16,200	7,600	38	1.7
2018	132,200	104,600	1,836	100,000	87,600	1,751	32,200	17,000	85	4.6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 지급자에 대한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9세대 중 18세대로 12.9%가 전출하였으며, 이중 1년 이내 전출자는 4세대로 22.2%에 이르고 있다.

[제대군인정착지원금 지급 후 전출 현황]

(단위 : 명)

년도	지급인원	전출 소요 기간				
		소계	6개월~1년	1년~1년6개월	1년6개월~2년	2년이상
합계	139	18	4	2	3	9
2016	16	2	-	-	-	2
2017	38	8	2	2	1	3
2018	85	8	2	-	2	4

다. 문제점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36세대가 전입하였으나, 이 중 일반 전입자는 5,197세대 97.4%로 이며, 제대군인은 139세대 2.6%로 총 전입세대 대비 제대군인 전입 비율은 2.6%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런데도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이 제대군인 정착자에게는 20만원을 일반 전입세대에게는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로 시민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제대군인이 관내에 정착하겠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실제 정착세대가 121세대로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 개선대책

- 인구증가 시책 추진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일반 전입세대와의 차별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계룡시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해 보면 영유아, 아동, 중장년층은

전국 대비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청년(20~34세) 비율은 전국 평균 19.3%(충남 17.57%)보다 3.6%가 낮은 15.7%로 최근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인구 비율(2018년 기준)

세대별	전국		충남		계룡시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합계	51,826,059	100.0	2,126,282	100.00	43,731	100.0
영유아(0~4세)	1,974,244	3.8	86,639	4.07	1,830	4.2
아동(5~19세)	7,459,971	14.4	315,936	14.86	9,470	21.7
청년(20~34세)	10,013,334	19.3	373,643	17.57	6,865	15.7
중장년(35~64세)	24,728,102	47.7	977,549	45.97	21,120	48.3
노령인구(65세이상)	7,650,408	14.8	372,515	17.52	4,000	10.2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인구증가 시책이 세대군인과 일반 전입세대와의 차별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경고 내역

연번	기관경고 내용	기관명	비고
1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등 부적정	계룡시(건설교통과)	
2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	계룡시(건설교통과)	
3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소홀	계룡시(보건소)	

경 고 장

계 룡 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등 부적정

- 계룡시(건설교통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광역교통법」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계획별 적정 부담금의 부과 또는 감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일반분양 목적의 4개블럭 주택 건설사업 신청과 관련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검토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시행 기간 중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법」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관련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공동1블럭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2018.03.27.일, 계룡대실 공동2블럭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2018.09.21.일, 계룡대실 공동3블럭 및 공동5블럭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계획은 2019.02.08.일 각각 임의로 부담금 감면 결정 협의하여 약 56억원의 부담금 손실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이에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의거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 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

충 청 남 도 지 사

경 고 장

계 룡 시

위 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함에 있어〉

○ 「교통안전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등) 등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동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의 보수·보강·신설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1)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미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등에 의거 교통사업자 등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영·조사, 보행우선구역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추진하여야 하나,

○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및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주요 사항을 심의를 하지 못하여 부실 도입, 운영이 예상된다.

○ 따라서 교통약자 등을 위한 사업 예산확보 어려움 등 계룡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이행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이행 집행하기 위한 2019년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보호구역내 안전장치 설치 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어
-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보행안전 개선 등 안전한 통행 제공에 소홀히 하였고 2018년 18,300천원의 용역비를 주고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업무 소홀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9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소를 지정예정에 있음에도
-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보호구역 지정·관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정·관리 업무를 소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미수립 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거 5년마다 “계룡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4~2018년)” 수립하면 확정·고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 계룡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18년 사망3명) 있는데도 2013. 12월 용역을 완료하고도 열람 고시 및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지도 않아 사업계획 46개지구중 13지구(28%)만 추진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 각종사업의 지연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지 못하였으며,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44백만원)를 주고 수립한 계획을 활용·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의거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

충 청 남 도 지 사

경 고 장

계 룡 시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소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제 5항에 따른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등이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2.1.26.)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정신재활시설(○○공동체)에서 7명에 대해 3년을 초과하여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7개월 동안 퇴소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소자 입·퇴소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정신재활시설(○○공동체) 운영위원회 위원을 계룡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에도, 임명·위촉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 시설(○○공동체)에서 자체 구성한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이에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의거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

충 청 남 도 지 사